



2026년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 기획예산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 재정경제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 국세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3
○ 조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7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기획예산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개 요	3
(1) 편성배경	3
(2) 주요내용	3
2. 기획예산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1)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5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안	6
3. 검토의견	7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검토(총괄, 예산실)	7
(2)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절성 검토 필요 등(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실)	13

재정경제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재정경제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5
(1) 국세 추가경정세입예산안	25
(2)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32
(3)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33
(4)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34
(5)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36
2. 검토의견	37
(1) 국세수입 경정의 필요성 검토(총괄: 세입, 세제실)	37
(2) 국세수입 경정규모의 적정성 검토(총괄: 세입, 세제실)	48

(3) 일반회계·기금 간 예탁금 조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국고실)	55
(4) 금리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국고실)	57
(5) 지방채 인수 규모에 대한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 인수(융자), 국고실)	60

국세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국세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5
(1)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65
2. 검토의견	66
(1) 본예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증원 (일반회계: 국세 체납관리단, 징세법무국)	66
(2) 법률 개정과 연동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일반회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징세법무국)	76

조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조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9
(1) 조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89
(2) 조달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90
(3) 조달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91
2. 검토의견	92
(1)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 실시 전 면밀한 준비 필요 등 (조달특별회계(손익):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시설사업국)	92

**기획예산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개 요

(1) 편성배경

최근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여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물류 비용 상승 등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동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을 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26.2조원으로 설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① 초과세수 25.2조원, ② 기금 자체재원 1.0조원을 제시하고 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조달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규모
① 초과세수	25.2
② 기금 자체재원	1.0
총 계	26.2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재구성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10.1조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2.8조원은 민생 안정, 2.6조원은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9.7조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활용하고, 1.0조원으로 국채를 상환하려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단위: 조원)

중점 사업 내용	금액
① 고유가 부담 완화	10.1
▪ 전국민 부담 경감(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5.1
▪ 고유가 피해지원금	4.8
▪ 에너지 복지	0.2
② 민생 안정	2.8
▪ 취약계층 일상 회복 뒷받침	0.8
▪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9
▪ 고물가 대응	0.1
③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
▪ 피해기업·산업 지원	1.1
▪ 에너지·신산업 전환	0.8
▪ 공급망 안정화	0.7
④ 지방재정 보강 등	9.7
⑤ 국채 상환	1.0
총 계	26.2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재구성

2. 기획예산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 16조 9,608억 원보다 2,901억원(1.7%) 증가한 17조 2,509억원임.

세출예산안에서는 ① 예비비 5조원을 증액하였고, 추경대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세입 부족분 지원으로 673억 증액하였음. ②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결산 실적을 감안하여 △4조 7,772억원 감액하였음.

[2026년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 확정예산 (A)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 (8010-801)	4,878,032	4,945,348	67,316	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전출 (교통·에너지·환경세분) (8010-802)	328,243	260,927	△67,316	△2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8010-803)	7,038,984	2,329,085	△4,709,899	△66.9
예비비 (3069-300)	4,000,000	9,000,000	5,000,000	125.0
합계(추경 대상)	16,245,259	16,535,360	290,101	1.8
총계(전체)	16,960,821	17,250,922	290,101	1.7

주) 총계기준

자료 : 기획예산처

* '26년 1.2일 조직 출범에 따른 재정경제부로부터의 이체분 포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안

2026년도 기획예산처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당초 21조 9,541억원 대비 1,389억원(0.6%) 증가한 22조 930억원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대비 ① 일반회계 전입금(지역지원계정)이 △4조 7,099억원 감액되고, ② 특별회계전입금(지역지원계정)이 4조 8,488억원 증액됨. 이는 농어촌특별세의 초과세수가 전망됨에 따라 농어촌 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체한 것임.

[202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6년 확정예산 (A)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세 입	219,541	220,930	1,389	0.6
○ 지역자율계정	96,443	96,443	-	-
○ 지역지원계정	116,796	118,185	1,389	1.2
- 주세 등	18,870	18,870	-	-
- 일반회계전입금	70,390	23,291	△47,099	△66.9
- 특별회계전입금	25,769	74,257	48,488	188.2
○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5,494	5,494	-	-
○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808	808	-	-

주) 총계기준

자료 : 기획예산처

* '26년 1.2일 조직 출범에 따른 재정경제부로부터의 이체분 포함

3. 검토의견

(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검토(총괄, 예산실)

< 현 황 >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하여 총 26.2조원(총지출: 25.2조원 + 국채상환 1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약 3개월 만에 제출된 것이며,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25.2조원) 및 기금 자체재원(1조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편성배경	주요내용	규 모
2020년도		(소계: 66.8)	
제1회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및 직·간접적 피해 대응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피해 보전 - 중기·소상공·민생·고용안전 및 지역경제 회복	11.7
제2회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 진작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2.2
제3회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 고용안정 특별대책 후속조치 - 한국판 뉴딜사업 - 금융안정 패키지 후속조치	35.1
제4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집중계층 지원	- 긴급 피해지원 및 고용안정 패키지 - 긴급 생계지원·돌봄 및 방역지원 패키지	7.8
2021년도		(소계: 49.8)	
제1회	코로나19 방역상황 장기화 및 고용상황 악화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 긴급 고용대책 및 방역 대책	14.9
제2회	코로나19 피해·방역 지원 및 민생 회복 뒷받침	-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백신·방역 보강 - 고용·민생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34.9
2022년도		(소계: 78.9)	
제1회	코로나19 방역 보강 및 피해지원	- 소상공인 지원(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 방역 보강 및 예비비 보강	16.9
제2회	코로나19 피해·방역 지원 및 민생·물가안정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및 방역 보강 - 민생·물가안정 및 예비비 보강	62.0
2025년도		(소계: 45.6)	
제1회	산불피해 복구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	- 산불 피해 복구 및 재난대응력 강화 -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생태계 혁신	13.8
제2회	코로나19 피해·방역 지원 및 민생·물가안정	- 소비·투자 촉진(지역사랑상품권) - 민생·물가안정	31.8

< 검토의견 >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물류비·유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민생경제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각 개별 사업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9조¹⁾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중동발(發) 고유가·고환율 위기에 따른 민생 안정 및 피해기업·산업 지원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 중 ‘경기침체 또는 경기침체 우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AI 투자 확대 및 미국 경기 호조를 반영하여 세계경제성장률을 3.3%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으나, 이는 중동 전쟁 발발 이전의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고서(2026.3.26)는 중동 분쟁 심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완전히 상쇄한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과 동일한 2.9%로 유지하였음²⁾.

특히, OECD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하였는데, 하향 폭은 G20 국가 가운데 영국($\Delta 0.5\text{p}$) 다음으로 큰 수치임. OECD는 한국을 비롯한 중동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는 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생산 활동에 부담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진단하여,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내수 악화 및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 중동 전쟁 발발(2월 28일) 이후, 주요 기관 중 경제성장률을 최초로 발표한 기관은 OECD임

[주요 기관의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현황]

(단위: %, %p)

구 분	기존 전망치	시점	수정 전망치	시점	변동폭
IMF	3.1	'25.10	3.3	'26.1	0.2
OECD	2.9	'25.12	2.9	'26.3	-

자료: OECD, 중간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주요 국내외 기관의 2026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조정현황]

(단위: %, %p)

구 분	기존 전망치	시점	수정 전망치	시점	변동폭	비고
한국은행	1.8	'25.11	2.0	'26.2	0.2	중동 전쟁 반영 전
KDI	1.8	'25.11	1.9	'26.2	0.1	중동 전쟁 반영 전
IMF	1.8	'25.10	1.9	'26.1	0.1	중동 전쟁 반영 전
OECD	2.1	'25.12	1.7	'26.3	△0.4	중동 전쟁 반영 후

자료: 각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OECD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G20 국가의 2026년 물가상승률을 4.0%('25.12월 전망 대비 +1.2%p),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을 2.7%('25.12월 전망 대비 +0.9%p)로 전망하며, 고물가가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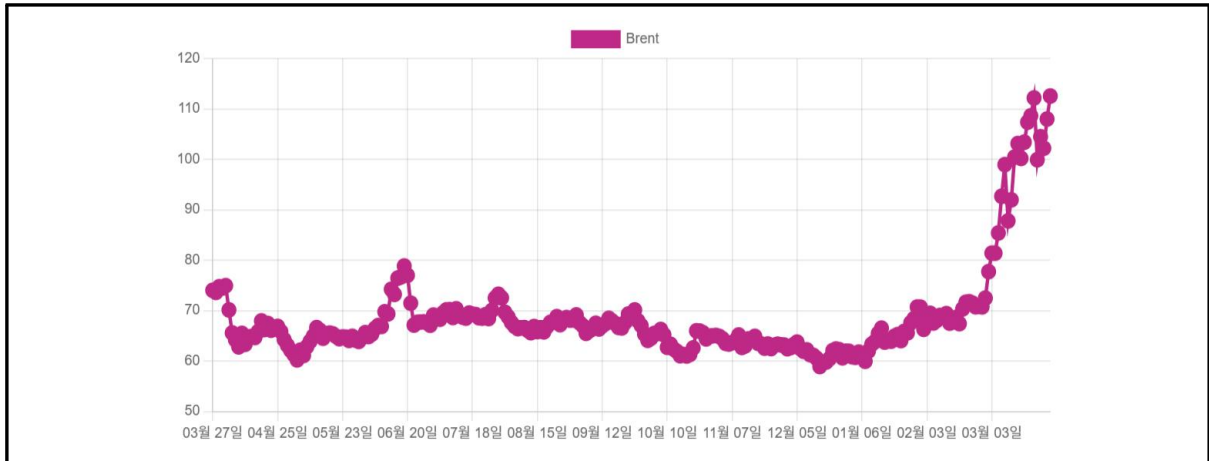
그 외에도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상회하고³⁾, 국고채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BIS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⁴⁾는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 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이른바 '3고(高) 현상' 발생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가격 변동 폭 완화를 위하여 2026년 3월 13일 1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3월 27일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고유가 완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및 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과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3) 2026.3.27.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4) BIS 원화 명목실효환율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계산·공표하는 원화의 평균적 대외 가치

[국제 원유가격(Brent)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국고채 금리 및 원/달러 환율]



주1) BIS 원화 명목실효환율 지수는 Broad Index 기준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경제상황 평가」, 2025. 4. 17.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개요]

- 적용대상: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
 - *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최고가격
 - 1차 최고가격(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 2차 최고가격(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
 - *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에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되,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 7%→15%, 경유 10→25%로 기존보다 확대
- 기대효과: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휘발유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인하

자료: 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 2026.3.26. 기준 국고채(3년) 금리: 3.552%, 국고채(10년) 금리: 3.865%

한편,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성장에 그쳤으며, 2025년 4/4분기 GDP는 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 기여도가 동반 축소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경기 부진의 개선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것임.

[실질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24 ^P				2025 ^P					
	1/4	2/4	3/4	4/4	1/4	2/4	3/4	4/4		
실질국내총생산 (실질 GDP)	1.2 (3.4)	-0.2 (2.2)	0.1 (1.4)	0.1 (1.1)	-0.2 (0.0)	0.7 (0.6)	1.3 (1.8)	-0.2 (1.6)		
민 간 소 비	0.5	0.0	0.4	0.2	-0.1	0.5	1.3	0.3 (1.9)		
정 부 소 비	0.9	0.8	0.9	0.4	0.0	1.2	1.3	1.3 (4.0)		
건 설 투 자	4.5	-3.3	-3.6	-4.1	-3.1	-1.2	0.6	-3.5 (-7.0)		
설 비 투 자	-1.0	0.0	5.4	0.8	-0.4	-2.1	2.6	-1.7 (-1.7)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9	-1.3	-0.2	0.9	1.5	0.8	1.2	-0.5 (3.0)		
재 고 증 감	-0.4	0.2	0.3	0.1	-0.1	0.2	-0.1	0.3 (0.2)		
수 출	1.3	1.5	0.0	0.6	-0.6	4.5	2.1	-1.7 (4.3)		
수 입	-0.3	1.6	1.3	0.2	-1.1	4.2	2.0	-1.5 (3.4)		

주: 2020년 연쇄가격 기준 /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국민소득(잠정)」, 2026. 3. 10.

특히, 최근 소비심리는 낙관적 경향⁶⁾을 보였으나,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6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5.1p 하락한 107.0을 기록함. 더욱이, 향후경기전망에 대한 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그 밖에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동향조사⁷⁾를 살펴보면, 매월 경기동향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실정임.

6) 소비자심리지수는 2003~2025년 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7) 100은 보합, 100을 초과하면 경기는 호전, 100미만이면 악화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25.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소비자심리지수	110.7	111.2	110.0	109.6	112.3	109.8	110.8	112.1	107.0
(전월 대비 지수차)	2.1	0.5	△1.2	△0.4	2.7	△2.5	1.0	1.3	△5.1
구성지수의	현재생활형편	0.6	0.6	0.0	0.0	△0.3	0.3	0.0	△0.6
	생활형편전망	0.0	0.0	△0.3	0.0	0.3	△0.3	0.0	△1.1
	가계수입전망	0.0	0.0	0.0	0.0	0.9	△0.4	0.0	△0.9
기여도(p)	소비지출전망	0.4	0.0	△0.4	0.0	0.0	0.4	0.0	0.0
	현재경기판단	1.3	0.8	△0.2	0.0	0.5	△0.8	0.1	0.5
	향후경기전망	△0.1	△0.8	△0.4	△0.4	1.0	△0.8	0.3	△1.6

자료: 한국은행, 「2026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2026. 3. 25.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25.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6.1월	2월	3월
소상공인	체감BSI	67.6	61.5	72.3	76.6	79.1	75.0	70.3	66.9	68.1	-
	전망BSI	79.1	76.2	76.7	88.3	86.8	90.7	83.2	76.1	80.1	87.2
전통시장	체감BSI	57.5	48.8	75.6	74.6	78.5	75.8	63.9	59.8	77.6	-
	전망BSI	69.9	69.9	73.0	85.5	91.2	87.2	80.8	69.7	84.1	78.1

자료: 통계청,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e-나라지표

이처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에너지 가격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투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대내외적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의 제도적 취지를 바탕으로 시급성 및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특히, 추경안의 일부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바, 시급성 및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절성 검토 등(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실)

< 현 황 >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⁸⁾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은 본예산 4조원 대비 5조원(125.0%)이 증가한 9조원으로, 목적예비비가 당초 3.2조원 대비 5.0조원(156.25%) 증액된 8.2조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예비비 (3069-300)	24,000	38,000	40,000	90,000	50,000	125.00
-일반예비비	8,000	12,000	8,000	8,000	-	-
-목적예비비	16,000	26,000	32,000	82,000	50,000	156.25

자료: 기획예산처

8)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비비 증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비비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예외적인 제도로 적정 규모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본예산 대비 125% 증액되어 역대 최대 증액 규모인 예비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예산과 달리 총액으로만 의결하고 세부 내역에 대하여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인 제도임. 이처럼 예비비는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의 재량이 크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이므로 적정 규모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제1회 추경안의 경우 기획예산처는 예비비를 2026년 본예산 규모인 4조원보다 큰 5조원 증액(125%)한 9조원을 편성하였음. 이러한 증액 규모 5조원은 추경안에서 예비비를 증액한 규모 중 역대 최대 규모임.

특히 2018년 이후로 추경안에서 증액되는 예비비 규모는 최대 1.4조원에 불과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증액 비율도 본예산 예비비가 이례적으로 크게 감액($\Delta 50\%$)되어 규모가 작았던 2025년이 최고 58.3%였고 최근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이례적으로 총 4번의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던 2020년의 경우에도 4회 추경 중 3회에 걸쳐 예비비의 증액이 있었으나 그 총 증액 규모가 2.36조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번 추경안에서의 예비비 증액 규모 5조원 및 본예산 대비 증액 비율 125.0%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음.

[2018~2026년 추경안 예비비 증액 편성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예산(a)	추경안(b)	증감		추경 (확정)
				증감액 (b-a)	증감율 [(b-a)/a]	
2018		3.0	3.25	0.25	8.3	3.05
2020	제1회	3.4	4.75	1.35	39.7	4.4
	제3회	4.4	5.7	1.3	29.6	5.56
	제4회	5.56	5.66	0.1	1.8	5.61
2021		8.6	9.7	1.1	12.9	9.7
2022	제1회	3.9	4.9	1.0	25.6	4.5
	제2회	4.5	5.5	1.0	22.2	5.5
2025		2.4	3.8	1.4	58.3	3.8
2026(안)		4.0	9.0	5.0	125.0	-

주: 예산은 본예산 또는 직전 추경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이처럼 큰 규모의 증액으로 인하여 2026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른 예비비는 9.0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러한 **예비비 9.0조원이라는 총 규모 역시 이례적으로 큰 규모인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예비비 편성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본예산부터 예비비가 평년보다 큰 8.6조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추경에서 1.1조원이 증액되어 최종 9.7조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음. 이러한 2021년을 제외하는 경우 최근 10년간 예비비 규모는 3~5조원 수준으로, 이러한 평년 수준의 예비비를 고려할 때 금번 추경안에서 편성된 9.0조원 규모의 예비비는 이례적으로 큰 수준임.

특히 목적예비비의 경우 금번 추경안에 당초 대비 156.25%에 해당하는 5조원이 증액된 8.2조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예외적으로 큰 규모로 편성되었던 2021년 목적예비비 8.1조원보다도 큰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임.

[최근 10년간 예비비 편성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3.0	3.05	3.0	5.61	9.7
일반예비비	1.2	1.2	1.2	1.4	1.6
목적예비비	1.8	1.85	1.8	4.21	8.1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전체	5.5	4.6	4.2	3.8	9.0
일반예비비	1.8	1.8	2.0	1.2	0.8
목적예비비	3.7	2.8	2.2	2.6	8.2

주: 추경이 있는 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 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예비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125% 규모인 5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 증액이 필요할 만큼 본예산 대비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예산처는 2026년 예비비 집행에 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문제를 되풀이하여 최근 개정된 「국가재정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제1회 추경안의 예비비 규모는 본예산의 2배 이상으로 증액된 점을 고려할 때, 그 증액 필요성이나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국회에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6년 1분기 예비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상세 내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사용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⁹⁾하였음. 이는 당해 연도 예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그 사용계획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임.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안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인 2026년 1분기 예비비 배정 금액, 배정 사유, 집행 상세

9)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역 및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음.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의 「국가재정법」상 제출 기한은 4월 말까지이고 해당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가재정법」의 동 규정은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 주기를 분기별로 설정한 것일 뿐, 해당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닐 것임.

특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일 뿐, 그 집행에 있어서 기밀성을 요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이 아닌 집행과정에서 그 내역 공개에 대하여 일반 예산과 다르게 특례를 둘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추경안에 편성된 타 사업들에 대해서는 2026년 3월말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증액의 필요성을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 역시 2026년 3월 말 기준 배정 및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추경안에서 예비비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사용계획명세서 및 집행 세부 내역 등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2026년도 3월 말까지의 예비비 배정 및 집행, 사용계획에 관한 세부내역을 조속히 제출하여 예비비 증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획예산처는 5조원이라는 예비비 증액 규모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각 용처별 예산액을 제시하지 않아 그 구체성이 떨어져 그 용처별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026년 제1회 추경안에서 예비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되었음. 기획예산처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손실보전¹⁰⁾ 및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 등을 위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다고 설명하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고 있음.

실제 기획예산처는 금번 추경안에 목적예비비 5조원을 증액하면서 예산총칙(안) 수정을 통하여 목적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유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안 예산총칙 비교]

2026년 예산	2026년 제1회 추경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4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4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증액된 예비비 5조원에 대하여 각 용처별 구체적인 예산액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5조원 중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지출이 얼마이고,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얼마인지, 그 외 다른 사유로 예비비를 증액한 것인지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는 그 증액 규모 자체가 본예산 4조원보다도 큰 5조원에 해당하는 등 그 규모 및 증액 비율이 역대 최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5조원’이라는 규모의 용처별 예산액 및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예비비 용처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증액 규모 5조원에 대하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그 외 사유 등 예비

비 증액 규모를 편성 사유별로 구분하고, 그 각각의 산출 근거를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그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시행을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 최고가격제 지속 예상 기간이나 유가 예측 수준 등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정보의 외부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세부적인 편성 근거를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등에서 비공개로 보고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에서의 예비비 증액 편성의 주된 사유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으로 설명하고 있음. 정부는 최근 중동 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 위기가 대두되면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한¹¹⁾ 바 있음.

실제 중동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 장기화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유 최고가격제의 장기화 여부 및 손실 규모 등은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동 사유로 예비비를 편성하더라도 정부가 예상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기간이나 유가 예측수준, 개략적인 손실 규모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만, 정부가 예상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기간이나 유가 수준 등은 공개할 경우 향후 최고가격제 시행이나 국내외 경제상황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비 증액 규모의 산출 근거가 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등에서 비공개로 보고하여 그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의 범위가 모호하여 그 판단에 있어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지출’의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전’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역시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11)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등

필요가 있음. 또한, 증액된 예비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각 사유별로 예비비 규모를 예산총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예비비 중 목적예비비는 예비비 중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목적을 정해놓은 예비비를 말함.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¹²⁾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라는 최대 규모의 제한이 있으나, 목적예비비는 그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대신 이러한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음.

이처럼 예비비의 경우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국가재정법」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며, 특히 목적예비비의 경우 그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이에 맞게 지출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목적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지출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을 새롭게 추가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요건만으로는 목적예비비의 지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있음.

[목적예비비 지출 범위]

①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② 인건비(연동경비 포함)
③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④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⑥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⑦ 국제부담금
⑧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⑨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⑩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2026년 제1회 추경안 추가)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우선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의 경우 ‘고유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치 않으며, 고유가의 원인이 되는 ‘국제정세 변동’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혹은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역시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또한, ‘대응을 위한 지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지출의 범위 결정에 있어서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음. 기획예산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을 동 요건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목적예비비 집행 범위의 명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목적예비비의 지출로 추가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역시 그 범위가 모호하여 구체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로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이번 추경안의 산업통상부 예산에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4,694억 5,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어 이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산업통상부) 2026년 제1회 추경안 편성 현황]

<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469,452백만원 >

가. (차액보조 지원금) 469,452백만원

·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① 대체수입 물량(213만톤) × 지원단가(22만원)*

* 수입단가 상승분(1,087\$/톤-783\$/톤) × 50% × 1,450원/\$

② 위탁정산운영비 : 300백만원

* 지원물량·단가 등은 글로벌 나프타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따라서 기획예산처에서 제시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인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의 경우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금번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지출을 목적예비비의 범위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산업통상부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 외의 내용으로 목적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출 내용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등과 같이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전술한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는 그 지출 요건이 불명확하게 규정될 경우 그 판단에 있어서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커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목적예비비의 지출

범위가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지출’의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지출’ 등으로 목적예비비의 구체적인 지출 사유를 적시하여 목적예비비의 지출 범위가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의 경우 산업통상부 예산으로 편성된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편성된 동 목적예비비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예산이므로 해당 증액분을 동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지출(00조원)’ 등으로 예산총칙상에 그 금액의 사용 목적을 한정하도록 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취지를 우회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5년의 경우 목적예비비 중 2,680억 9,000만원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이를 규정한 바 있음.

[2025년도 본예산 예산총칙 중 목적예비비 규정]

2025년 본예산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1,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소요경비,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소요경비(268,090,000,000 원) ,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재정경제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재정경제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국세 추가경정세입예산안

가) 국세수입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예산안은 415조 4,190억원¹³⁾으로, 2026년 본예산 390조 2,334억원 대비 25조 1,856억원을 증액(6.5%)한 것이고, 2025년도 실적 373조 9,193억원 대비 41조 4,997억원이 증가(11.1%)한 규모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8조 6,528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378조 5,895억원 대비 20조 633억원 증가(5.3%)한 규모이고 2025년 징수실적 361조 4,941억원 대비 37조 1,587억원 증가(10.3%)한 규모임.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6조 7,662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11조 6,439억원 대비 5조 1,223억원 증가(44.0%)한 규모이고 2025년 징수실적 12조 4,252억원 대비 4조 3,410억원 증가(34.9%)한 규모임.

정부는 예산편성('25.8월) 대비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 및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수입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25조 1,856억원 증액경정하려는 것임.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세수입 예산안 415.4조원은 일반회계 국세세입 예산안 398.7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주세) 3.1조원 외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농어촌특별세) 13.6조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를 포함한 전체 국세수입 예산안 규모를 기재하였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단위: 억 원, %)

세 목	2024년 실적	2025년			2026년		25년 실적대비		26년 본예산대비	
		본예산	확정 예산	실적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총 국 세	3,365,324	3,824,296	3,720,850	3,739,193	3,902,334	4,154,190	414,997	11.1	251,856	6.5
[일반회계]	3,261,793	3,718,050	3,614,604	3,614,941	3,785,895	3,986,528	371,587	10.3	200,633	5.3
◇ 내 국 세	2,982,594	3,381,292	3,291,519	3,302,404	3,438,893	3,681,133	378,730	11.5	242,240	7.0
○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268,192	1,304,526	1,320,208	1,368,179	63,655	4.9	47,971	3.6
○ 법 인 세	625,113	882,544	835,671	846,090	865,474	1,013,215	167,125	19.8	147,741	17.1
○ 상속 및 증여세	152,982	145,059	154,437	164,799	170,163	170,163	5,364	3.3	-	-
○ 부가가치세	822,358	876,388	833,292	791,790	866,039	866,039	74,249	9.4	-	-
○ 개별소비세	86,566	96,663	87,479	85,144	94,344	89,004	3,860	4.5	△5,340	△5.7
○ 증권거래세	47,602	38,454	38,454	34,430	53,753	105,621	71,191	206.8	51,868	96.5
○ 인 지 세	8,460	8,836	8,836	7,637	7,734	7,734	97	1.3	-	-
○ 과년도수입	65,334	65,156	65,156	67,989	61,178	61,178	△6,811	△10.0	-	-
◇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51,048	140,012	132,351	164,122	130,464	△1,887	△1.4	△33,658	△20.5
◇ 관 세	69,723	84,093	84,093	76,409	72,214	72,214	△4,195	△5.5	-	-
◇ 교 육 세	53,738	60,402	57,765	57,235	64,433	56,484	△751	△1.3	△7,949	△12.3
◇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1,215	46,542	46,233	46,233	△309	△0.7	-	-
[특별회계]	103,531	106,246	106,246	124,252	116,439	167,662	43,410	34.9	51,223	44.0
◇ 주 세	33,282	32,093	32,093	32,120	31,451	31,451	△669	△2.1	-	-
◇ 농어촌특별세	70,249	74,153	74,153	92,132	84,988	136,212	44,080	47.8	51,223	60.3

자료: 재정경제부

나) 세목별 경정내역 및 주요내용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4개 세목 중에서 ①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4개 세목은 2026년 본예산 대비 총 29조 8,803억원 증액경정하고, ②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3개 세목은 2026년 본예산 대비 총 4조 6,947억원 감액경정하여 2026년 본예산 대비 총 25조 1,856억원 증액한 합계 총 415조 4,190억원으로 편성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목별 경정내역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증액 경정	1	소득세	1,320,208	1,368,179	47,971	3.6
	2	법인세	865,474	1,013,215	147,741	17.1
	3	증권거래세	53,753	105,621	51,868	96.5
	4	농어촌특별세	84,988	136,212	51,223	60.3
감액 경정	5	개별소비세	94,344	89,004	△5,340	△5.7
	6	교통·에너지·환경세	164,122	130,464	△33,658	△20.5
	7	교육세	64,433	56,484	△7,949	△12.3
합 계			2,647,322	2,899,179	251,856	9.5

자료: 재정경제부

구체적인 세목별 추가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2026년 본예산 대비 4조 7,971억원 증액(3.6%)하여 136조 8,179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이는 2025년 징수실적 대비 6조 3,655억원 증가(4.9%)한 것임.

소득세 신고분(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은 경정 없이 2026년 본 예산과 동일한 43조 548억원으로 하고, 소득세 원천분은 2026년 본예산 대비 4조 7,971억원 증액(5.4%)하여 93조 7,631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이는 2025년 징수실적 대비 4조 4,791억원 증가(5.0%)한 것임.

소득세 원천분 중 ① 근로소득세는 예산편성('25.8월) 대비 '26년 상용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율 전망 상향¹⁴⁾, '25년 세수실적 증가¹⁵⁾ 등 상향요인을 반영하여 2026년 본예산 대비 4조 7,941억원 증액(7.0%)하여 73조 2,482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5년 징수 실적 대비 4조 8,266억원 증가(7.1%)한 것임.

② 그 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의 소득세 원천분은 경정없이 본예산과 동일함.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세 외의 항목의 경우 당초 전망과 큰 차이가 없거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별도의 경정을 하지 않았음.

[소득세의 경정내역 세부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024년 실적	2025년			2026년		25년 실적대비		26년 본예산대비	
		본예산	확정예산	실적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268,192	1,304,526	1,320,208	1,368,179	63,655	4.9	47,971	3.6
◦ 신 고 분	362,116	414,698	414,698	411,685	430,548	430,548	18,863	4.6	-	-
-종합소득	195,265	220,582	220,582	212,830	226,270	226,270	13,440	6.3	-	-
-양도소득	166,852	194,116	194,116	198,855	204,278	204,278	5,423	2.7	-	-
◦ 원 천 분	812,063	853,494	853,494	892,840	889,660	937,631	44,791	5.0	47,971	5.4
-이자소득	71,958	63,121	63,121	70,137	60,118	60,118	△10,019	△143	-	-
-배당소득	42,680	46,757	46,757	45,530	46,423	46,423	893	2.0	-	-
-사업소득	46,828	51,060	51,060	49,625	52,665	52,665	3,040	6.1	-	-
-근로소득	610,491	647,310	647,310	684,216	684,511	732,482	48,266	7.1	47,971	7.0
-연금소득	5,591	6,914	6,914	6,880	8,775	8,775	1,895	27.5	-	-
-기타소득	23,533	26,647	26,647	24,021	24,679	24,679	658	2.7	-	-
-퇴직소득	10,982	11,685	11,685	12,430	12,490	12,490	60	0.5	-	-

자료: 재정경제부

14) '26년 상용근로자수(만명): (예산) 1687.7 → ('26.1월) 1,691.0 <+13.0>

'26년 임금상승률(전체 | 상용, %): (예산) 2.5 | 2.4 → ('26.1월) 2.6 | 2.7 <0.1%p | 0.3%p>

15) '25년 근로소득세(조원): (예산편성시 전망) 66.8 → (실적) 68.4 <+1.6조원>

법인세는 2026년 본예산 대비 14조 7,741억원 증액(17.1%)하여 101조 3,215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이는 2025년 징수실적 대비 16조 7,125억원 증가(19.8%)한 것임.

법인세 신고분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3조 3,148억원 증액(21.0%)하여 76조 6,801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이는 2025년 징수실적 대비 15조 7,772억원 증가(25.9%)한 것임. 이는 AI 투자 확대 등으로 반도체 기업의 2026년 실적 상향 전망을 반영한 것임.

법인세 원천분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조 4,593억원 증액(6.3%)하여 24조 6,415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5년 징수실적 대비 9,354억원 증가(3.9%)한 것임. 이는 2월 누계 실적 및 진도비가 전년 동월 대비 개선된 것¹⁶⁾을 반영한 것임.

[법인세의 경정내역 세부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024년 실적	2025년			2026년		25년 실적대비		26년 본예산대비	
		본예산	확정예산	실적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법 인 세	625,113	882,544	835,671	846,090	865,474	1,013,215	167,125	19.8	147,741	17.1
-신 고 분	394,161	658,570	596,605	609,029	633,653	766,801	157,772	25.9	133,148	21.0
-원 천 분	230,951	223,974	239,066	237,061	231,821	246,415	9,354	3.9	14,593	6.3

자료: 재정경제부

증권거래세는 2026년 본예산 대비 5조 1,868억원 증액(96.5%)하여 10조 5,621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5년 징수실적 대비 7조 1,191억원 증가(206.8%)한 것이고, 농어촌특별세는 2026년 본예산 대비 5조 1,223억원 증액(60.3%)하여 13조 6,212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5년 징수실적 대비 4조 4,080억원 증가(47.8%)한 것임.

이는 증권시장 활성화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증권 거래대금이 증가하였고,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에도 거래대금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16) 법인세 원천분 누계 실적: ('25.2) 3조 9,586억원 → ('26.2) 4조 1,149억원 <+1,563억원>
법인세 원천분 진도비(%): ('25.2) 16.7 → ('26.2) 17.8 <+1.1%p, 5년평균 진도비는 15.2% 수준>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의 경정내역 세부현황]

(단위: 억원, %)

세 목	2024년 실적	2025년			2026년		25년 실적대비		26년 본예산대비	
		본예산	확정 예산	실적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증권거래세	47,602	38,454	38,454	34,430	53,753	105,621	71,191	206.8	51,868	96.5
농어촌특별세	70,249	74,153	74,153	92,132	84,988	136,212	44,080	47.8	51,223	60.3

자료: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는 2026년 본예산 대비 5,340억원 감액(△5.7%)하여 8조 9,004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5년 징수실적 대비 3,860억원 증가(4.5%)한 것임.

이는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조치¹⁷⁾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26년 본예산 대비 3조 3,658억원 감액(△20.5%)하여 13조 464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5년 징수실적 대비 1,887억원 감소(△1.4%)한 것임.

이는 2026년 휘발유·경유 수요전망 변경¹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¹⁹⁾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임.

교육세는 2026년 본예산 대비 7,949억원 감액(△12.3%)하여 5조 6,484억원으로 경정하였는데, 2025년 징수실적 대비 751억원 감소(△1.3%)한 것임.

이는 2026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망 변경 등을 감안하여 감액한 것임.

17) '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25.12발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조치를 '26.6월까지로 6개월 연장

18) 휘발유 소비 전망(천배럴, 예경연): (예산 전제) 15,094 → ('26.1 전망) 15,658 <+3.7%>

경유 소비 전망(천배럴, 예경연): (예산 전제) 24,793 → ('26.1 전망) 21,538 <△13.1%>

19) 휘발유/경유·부탄 탄력세율(%): (1~3월) △7/△10 → (4~5월) △15/△25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의 경정내역 세부현황]

(단위: 억 원, %)

세 목	2024년 실적	2025년			2026년		25년 실적대비		26년 본예산대비	
		본예산	확정 예산	실적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개별소비세	86,566	96,663	87,479	85,144	94,344	89,004	3,860	4.5	△5,340	△5.7
교 통 세	113,891	151,048	140,012	132,351	164,122	130,464	△1,887	△1.4	△3,658	△20.5
교 육 세	53,738	60,402	57,765	57,235	64,433	56,484	△751	△1.3	△7,949	△12.3

자료: 재정경제부

(2)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당초 496조 9,171억 원 대비 17조 2,993억원(3.5%) 증가한 514조 2,164억원임.

국세수입은 내국세 수입 24조 2,240억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 3조 3,658억원 및 교육세 7,949억원이 감액되었음. 세외수입은 기금 예수금 2조 7,613억원 및 특별회계 전입금 26억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 확정예산 (A)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일반회계	496,917,106	514,216,420	17,299,314	3.5
○ 국세수입	378,589,524	398,652,825	20,063,301	5.3
- 내국세	343,889,346	368,113,310	24,223,964	7.0
- 관 세	7,221,426	7,221,426	-	-
- 교통·에너지·환경세	16,412,159	13,046,366	△3,365,793	△20.5
- 교육세	6,443,294	5,648,424	△794,870	△12.3
- 종합부동산세	4,623,299	4,623,299	-	-
○ 세외수입	118,327,582	115,563,595	△2,763,987	△2.3
- 재산수입	8,725,118	8,725,118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특별회계전입금)	114,274	111,635	△2,639	△2.3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기금예수금)	108,304,108	105,542,760	△2,761,348	△2.5
- 그 밖의 항목	1,184,082	1,184,082	-	-

주) 총계기준. 2026년 기획재정부 본예산에서 기획예산처, 기후에너지부 이체 제외
자료 : 재정경제부

(3)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2026년도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 28조 6,162억 원 대비 414억원($\Delta 0.1\%$) 감소한 28조 5,748억원임.

세출예산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14억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년 확정예산 (A)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711-871)	25,558,448	25,517,028	$\Delta 41,420$	$\Delta 0.2$
합계(추경 대상)	25,558,448	25,517,028	$\Delta 41,420$	$\Delta 0.2$
총계(전체)	28,616,172	28,574,752	$\Delta 41,420$	$\Delta 0.1$

주) 총계기준. 2026년 기획재정부 본예산에서 기획예산처,기후에너지부 이체 제외
자료 : 재정경제부

(4)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번 추경안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 자금 조달·운용 규모는 당초 328조 4,837억원 대비 4,022억원(△0.1%) 감소한 328조 815억원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의 수입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15억원·기금예탁이자수입 124억원·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4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예수금 3,793억원·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 414억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6년 확정예산 (A)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괄 계정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	1,780	1,795	15	0.8
	기금 예탁이자수입	68,345	68,468	124	0.2
	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3,996	4,042	46	1.2
	기금예수금	219,389	215,596	△3,793	△1.7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	255,584	255,170	△414	△0.2
	합계(총괄계정 전체)	3,283,230	3,279,207	△4,022	△0.1
용자계정		1,608	1,608	-	-
차관계정		-	-	-	-
합계(전체)		3,284,837	3,280,815	△4,022	△0.1

주) 총계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의 지출 측면의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 대비 지방채인수(용자) 1,000억원·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1,066억원·기타기금예탁 8,245억원·특별회계예탁 3,062억원·국고채원금상환 1조 275억원이 증액되었고,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57억원·일반회계예탁 2조 7,613억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출계획변경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6년 확정예산 (A)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괄 계 정	지방채인수(융자)	1,000	2,000	1,000	100.0
	국고채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 포함)	343,155	344,221	1,066	0.3
	기타기금예탁	398,104	406,349	8,245	2.1
	특별회계예탁	29,125	32,187	3,062	10.5
	국고채원금상환	1,162,180	1,172,455	10,275	0.9
	기타기금예수이자상환	7,509	7,452	△57	△0.8
	일반회계예탁	1,083,041	1,055,428	△27,613	△2.5
	합계(총괄계정 전체)	3,283,230	3,279,207	△4,022	△0.1
융자계정		1,608	1,608	-	-
차관계정		-	-	-	-
합계(전체)		3,284,837	3,280,815	△4,022	△0.1

주) 총계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예탁 잔액은 추경안 기준 978조 7,060억원에서 2조 7,613억원 감소한 975조 9,44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추경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탁 잔액 변동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확정 예산	추경안
발행	862,000	554,413	966,384	1,136,570	1,083,041	1,055,428
원금상환	35,550	11,414	-	936	-	-
이자상환	104,558	59,056	181,486	286,367	255,584	255,170
잔액	6,057,894	6,600,894	7,568,385	8,704,019	9,787,060	9,759,447

자료: 재정경제부

(5)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회계·기금 간 주요 내부거래를 세입·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조달청 조달특별회계 손익계정 세출 예산안(「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26억 3,900만원이 증액되어 조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자금 26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음. 그리고 일반회계 자금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조 7,613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음.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792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음.

회계·기금 간 주요 내부거래를 세출·지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타기금 및 회계의 주요사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예탁금이 8,244억 7,800만원 증액되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탁금이 3,062억 700만원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예탁금이 2조 7,613억 4,800만원 감액되었음.

[재정경제부 소관 회계·기금 간 주요 내부거래]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		2026년 본예산 (A)	2026년 추경안 (B)	증감 (B-A)	%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세입·수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입 (91-912)	240,295	240,295	114,274	111,635	△2,639	△2.3
	기금예수금 (94-943)	82,765,297	114,948,803	108,304,108	105,542,760	△2,761,348	△2.5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예수금 (94-943)	21,890,555	22,794,629	21,938,868	21,559,607	△379,261	△1.7
세출·지출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타기금예탁 (9020-900)	44,477,199	44,763,785	39,810,441	40,634,919	824,478	2.1
	특별회계예탁 (8540-853)	2,766,163	3,310,377	2,912,541	3,218,748	306,207	10.5
	일반회계예탁 (8520-851)	82,765,297	114,948,803	108,304,108	105,542,760	△2,761,348	△2.5

주) 총계기준

자료 : 재정경제부

2. 검토의견

(1) 국세수입 경정의 필요성 검토

(총괄: 세입, 세제실)

< 현 황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 증액경정액은 25.2조원으로, 2000년 이후 여섯번째 증액경정이며, 같은기간 중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 증액경정(53.3조원),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 증액경정(31.5조원) 다음으로 큰 금액임.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세입 증액 경정) 편성 현황]

(단위: 조원)

연 도	제출일	의결일	본예산 (A)	추경예산 (B)	경정액	징수실적 (C)	실적본예산 (C-A)	실적-추경 (C-B)
2003	6.5	7.15	113.6	114.9	+1.3	114.7	1.1	△0.2
2005	9.29	11.16	130.6	127.0	△3.6	127.5	△3.1	0.5
2009	3.30	4.29	175.4	164.0	△11.4	164.5	△10.9	0.5
2013	4.18	5.7	216.4	210.4	△6.0	201.9	△14.5	△8.5
2015	7.6	7.24	221.1	215.7	△5.4	217.9	△3.2	2.2
2016	7.26	9.2	222.9	232.7	+9.8	242.6	19.7	9.9
2017	6.7	7.2	242.3	251.1	+8.8	265.4	23.1	14.3
2020	① 3.5 ③ 6.4	① 3.17 ③ 7.3	292.0	① 291.2 ③ 279.7	① △0.8 ③ △11.5	285.5	③ △6.5	③ 5.8
2021	7.2	7.24	282.7	314.3	+31.5	344.1	61.3	29.8
2022	5.13	5.29	343.4	396.6	+53.3	395.9	52.6	△0.7
2025	6.23	7.4	382.4	372.1	△10.3	373.9	△8.5	1.8
2026	3.31	-	390.2	415.4	+25.2	-	-	-

주: 원괄호는 해당 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경정을 실시한 추가경정예산 회차를 의미함.

음영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세수입 증액경정이 포함된 해를 표시함.

정부는 국세징수 실적 및 거시경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대비 상방요인이 발생하여 세입예산 대비 세수증가 전망이 비교적 확실한 4개 세목인 법인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증액하고, 탄력세율 인하·세수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교통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액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밝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목별 경정 내역]

(단위: 억원, %)

세 목	2024년 실적	2025년			2026년			24년 실적 대비		25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확정예산	실적	본예산	제1회 추경안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총 국 세	3,365,324	3,824,296	3,720,850	3,739,193	3,902,454	4,154,190	251,736	788,866	23.4	329,894	8.6
일 반 회 계	3,261,738	3,718,050	3,614,604	3,614,941	3,786,015	3,986,528	200,513	724,735	22.2	268,478	7.2
○ 내 국 세	2,982,594	3,381,292	3,291,519	3,302,404	3,439,013	3,681,133	242,120	698,539	23.4	299,841	8.9
1.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268,192	1,304,526	1,321,175	1,368,179	47,004	193,999	16.5	99,987	7.9
신 고 분	362,116	414,698	414,698	411,685	431,515	430,548	△967	68,432	18.9	15,850	3.8
종합소득	195,265	220,582	220,582	212,830	226,270	226,270	0	31,005	15.9	5,688	2.6
양도소득	166,852	194,116	194,116	198,855	205,245	204,278	△967	37,426	22.4	10,162	5.2
원 천 분	812,063	853,494	853,494	892,840	889,660	937,631	47,971	125,568	15.5	84,137	9.9
이자소득	71,958	63,121	63,121	70,137	60,118	60,118	0	△11,840	△16.5	△3,003	△4.8
배당소득	42,680	46,757	46,757	45,530	46,423	46,423	0	3,743	8.8	△334	△0.7
사업소득	46,828	51,060	51,060	49,625	52,665	52,665	0	5,837	12.5	1,605	3.1
근로소득	610,491	647,310	647,310	684,216	684,511	732,482	47,971	121,991	20.0	85,172	13.2
연금소득	5,591	6,914	6,914	6,880	8,775	8,775	0	3,184	56.9	1,861	26.9
기타소득	23,533	26,647	26,647	24,021	24,679	24,679	0	1,146	4.9	△1,968	△7.4
퇴직소득	10,982	11,685	11,685	12,430	12,490	12,490	0	1,508	13.7	805	6.9
2. 법 인 세	625,113	882,544	835,671	846,090	865,474	1,013,215	147,741	388,102	62.1	130,672	14.8
신 고 분	394,161	658,570	596,605	609,029	633,653	766,801	133,148	372,640	94.5	108,231	16.4
원 천 분	230,951	223,974	239,066	237,061	231,821	246,415	14,594	15,464	6.7	22,441	10.0
3 상속세 및 증여세	152,982	145,059	154,437	164,799	170,163	170,163	0	17,181	11.2	25,104	17.3
상 속 세	96,440	84,637	94,015	100,393	109,468	109,468	0	13,028	13.5	24,831	29.3
증 여 세	56,542	60,422	60,422	64,406	60,695	60,695	0	4,153	7.3	273	0.5
4. 부가가치세	822,358	876,388	833,292	791,790	865,750	866,039	289	43,681	5.3	△10,349	△1.2
5. 개별소비세	86,566	96,663	87,479	85,144	93,786	89,004	△4,782	2,438	2.8	△7,659	△7.9
6. 증권거래세	47,602	38,454	38,454	34,430	53,753	105,621	51,868	58,019	121.9	67,167	174.7
7. 인 지 세	8,460	8,836	8,836	7,637	7,734	7,734	0	△726	△8.6	△1,103	△12.5
8. 과년도수입	65,334	65,156	65,156	67,989	61,178	61,178	0	△4,156	△6.4	△3,979	△6.1
9. 교 통 세	113,891	151,048	140,012	132,351	164,122	130,464	△33,658	16,573	14.6	△20,584	△13.6
10. 관 세	69,723	84,093	84,093	76,409	72,214	72,214	0	2,491	3.6	△11,879	△14.1
11. 교 육 세	53,738	60,402	57,765	57,235	64,433	56,484	△7,949	2,746	5.1	△3,918	△6.5
12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1,215	46,542	46,233	46,233	0	4,386	10.5	5,018	12.2
특 별 회 계	103,531	106,246	106,246	124,252	116,439	167,662	51,223	64,131	61.9	61,416	57.8
13. 주 세	33,282	32,093	32,093	32,120	31,451	31,451	0	△1,831	△5.5	△642	△2.0
14. 농 특 세	70,249	74,153	74,153	92,132	84,988	136,212	51,224	65,963	93.9	62,059	83.7

< 검토의견 >

첫째, 2월까지의 국세수입 징수실적이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내수회복 지연 및 대외여건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인해 향후 세입여건이 낙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부 산업군의 실적 증가 예상치만을 근거로 한 국세수입 증액경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의 국세수입 징수실적은 71.0조원으로 2026년 본예산 390.2조원 대비 18.2% 수준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세입규모 기준 10.0조원, 진도율 기준(25년 2월 기준 16.3%) 1.9%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국세수입 실적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는 회계연도의 1/6밖에 경과하지 않은 2월말 기준 세수 실적으로, 해당 실적 증가치와 추경 증액경정 내역과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1년~2026년 2월 누적 국세수입 징수실적 및 진도율]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 평균	2026년
징수실적	577,913	699,761	542,417	580,181	609,678	601,990	710,030
진도비*	16.8	17.7	15.8	17.2	16.3	16.8	18.2

주: '25년 이전은 연간 실적 대비 2월 진도비, '26년은 예산 대비 진도비임
자료: 재정경제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주요 세목별로 2월까지의 국세수입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① 근로소득세는 전년 대비 1.0 조원 가량 증가한 19.2조원으로, 진도율 역시 다소 증가하였음('25.2. 26.6% → '26.2. 28.0%). 또한, ② 증권거래세는 1.2조원 증가하였고, 진도율도 32.6%로 전년 대비('25.2. 16.5%) 증가하였음. 한편 ③ 금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 대비 4.1조원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진도율도 전년 대비 3.0%p 증가하였으며('25.2. 26.6% → '26.2. 28.0%), ④ 추경에서 감액경정된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경우 수납규모가 각각 0.1조원, 0.3조원씩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목별 증액경정 내역과 1·2월 국세수입 실적과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26년 2월 세수 실적]

(단위 : 조원, %)

세목	구분	'25년 실적	'26년 예산	2월 당월 실적				2월 누계 실적			
				'25년	'26년	증감	(증감율)	'25년	'26년	증감	(증감율)
총국세		373.9	390.2	14.3	18.1	3.8	(26.4)	61.0	71.0	10.0	(16.5)
일 반 회 계		361.5	378.6	14.0	16.8	2.9	(20.4)	59.6	68.5	8.8	(14.8)
○ 내 국 세		330.2	343.9	12.1	14.7	2.6	(22.0)	55.6	63.9	8.3	(14.9)
- 소 득 세		130.5	132.0	13.2	14.1	0.9	(7.0)	26.8	29.2	2.4	(9.1)
- 양도소득세		19.9	20.4	2.1	2.9	0.7	(33.5)	3.1	4.2	1.1	(33.5)
- 근로소득세		68.4	68.5	9.2	9.3	0.1	(1.0)	18.2	19.2	1.0	(5.4)
- 법 인 세		84.6	86.5	1.5	1.5	0.0	(2.3)	4.2	4.2	0.0	(1.0)
- 상속세 및 증여세		16.5	17.0	1.2	1.1	△0.0	(△3.6)	2.0	2.3	0.3	(12.5)
- 부가가치세		79.2	86.6	△5.4	△5.1	0.3	(△5.1)	16.8	21.0	4.1	(24.5)
- 개별소비세		8.5	9.4	0.5	0.7	0.2	(41.9)	1.6	1.7	0.1	(3.7)
- 증권거래세		3.4	5.4	0.3	1.3	1.0	(372.2)	0.6	1.7	1.2	(207.1)
○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6.4	1.0	1.2	0.2	(21.4)	2.1	2.4	0.3	(15.9)
○ 교 육 세		5.7	6.4	0.3	0.2	△0.1	(△22.8)	0.7	0.7	0.0	(2.2)
○ 관 세		7.6	7.2	0.5	0.6	0.1	(10.6)	1.1	1.2	0.1	(10.4)
특 별 회 계		12.4	11.6	0.4	1.3	0.9	(257.0)	1.3	2.5	1.2	(88.2)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향후 세입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발표자료²⁰⁾에 따르면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 건설투자 회복속도,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

20) (재정경제부)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나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 건설투자 회복속도, 미국 관세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 우려. 글로벌 경제는 중동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 우려(「2026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026. 3.)

는 가운데,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OECD는 최근(2026.3.) 발표자료에서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동결하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 하방 압력을 반영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p에서 1.7%로 0.4%p 하향하고 있고,²¹⁾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²²⁾하는 등 향후 세입여건이 낙관적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 따라서 위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국세수입 증액경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추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6년도 세입예산이 확정된 지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세입경정추경안이 편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조기 세입경정으로 인한 향후 재정운용 부담의 이연 가능성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경정은 대체로 연중 세입 흐름이 확인된 이후인 회계연도 중반 이후에 실시되었는데, 이는 해당 시기까지의 세입진도율, 향후 경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회계연도 내 세입규모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세입경정을 추진했기 때문임.

그런데 정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과정에서 통상적인 논의 시기보다 앞선 시점인 3월 말에 세입 증액경정을 추진하고 있음. 세입경정은 연중 세수 흐름과 주요 세목의 수납상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추경의 경우 실질적인 세수 흐름이 확인되기 전에 추진되고 있는데,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6: Testing Resilience, 2026.3.26. OECD. OECD는 한국이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으며,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제조업 비중이 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 물가상승과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로 즉각 연결된다고 분석함.

22) 최근 씨티그룹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0.2%p, 바클레이즈는 2.1%에서 2.0%로 각각 하향 조정함.

[2000년 이후 세입 경정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일 현황]

(단위: 조원)

연 도	본예산(A)	추경 예산(B)	경정액	제출일	의결일
2003	113.6	114.9	+1.3	6.5	7.15
2005	130.6	127.0	△3.6	9.29	11.16
2009	175.4	164.0	△11.4	3.30	4.29
2013	216.4	210.4	△6.0	4.18	5.7
2015	221.1	215.7	△5.4	7.6	7.24
2016	222.9	232.7	+9.8	7.26	9.2
2017	242.3	251.1	+8.8	6.7	7.2
2020	292.0	① 291.2 ③ 279.7	① △0.8 ③ △11.5	① 3.5 ③ 6.4	① 3.17 ③ 7.3
2021	282.7	314.3	+31.5	7.2	7.24
2022	343.4	396.6	+53.3	5.13	5.29
2025	382.4	372.1	△10.3	6.23	7.4
2026	390.2	415.4	+25.2	3.31	-

먼저, 회계연도 초기에 세입경정이 추진됨에 따라 경정 세목 및 규모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납입된 세수 실적을 반영하기보다는 향후 전망치를 주요 근거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금번 세입경정은 2026년 2월까지의 세수실적과 일부 세목의 전망 변화를 근거로 하고 있음. 그런데 2월까지의 세수 누계 실적만으로 연간 세수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징수실적에 기초한 조정이라기보다는 향후 전망치에 주로 의존한 세입경정으로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법인세의 경우 1·2월 진도율 등 세수 실적은 전년과 유사한 상황으로, 아직 실적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 산업 분야의 전망치만을 근거로 세입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특히 법인세는 3월말 신고 및 8월 중간예납이 핵심인데, 아직 본격적인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연간세입을 대폭 상향하여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는 것은 실적치보다는 향후 예측치를 주요 기반으로 한 것임을 시사함. 또한 ② 근로소득세의 경우 2026년 1월 기준 상용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율 상향 전망치를 근거로 증액하고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결국 이번 세입경정은 현재까지 확인된 실적에 따른 경정이라기보다는 향후 전망을 앞당겨 반영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임.

회계연도 중 이른 시점에 초과 세수 전망치만을 전제로 세입을 증액하는 것은 주요 세목의 징수 실적 등 실제 세수 흐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 기업실적, 자산시장 현황, 대외충격 변수 등에 대한 전망치를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므로, 세수전망을 가정과 예측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해 연도 내 잔여기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추계 오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러한 오차 발생 가능성은 잔여 회계연도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질 수 있는데, 일단 증액된 세입은 세출 확대 재원으로 즉시 활용됨에 따라 추후 전망에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을 감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연도 초반의 세입경정은 보다 보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로, 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상 초과세수 1.3조원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 경정하였으나, 결산에서는 추가경정예산보다 국세수입이 0.2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②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53.3조원을 증액하여 세입경정하였으나, 결산에서는 추경예산보다 국세수입이 0.7조원 부족하여 세수결손이 발생함.

[2000년 이후 추가경정예산(증액 세입경정) 중 차년도 세수결손 사례]

(단위: 조원)

연 도	제출일	의결일	본예산 (A)	추경예산 (B)	경정액	징수실적 (C)	실적본예산 (C-A)	실적-추경 (C-B)
2003	6.5	7.15	113.6	114.9	+1.3	114.7	1.1	△0.2
2022	5.13	5.29	343.4	396.6	+53.3	395.9	52.6	△0.7

셋째, 외형상으로는 다수의 세목에 분산되어 증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경기·자산여건 변동에 민감한 세목에 집중되어 있고, 반도체 업황 개선과 증권거래대금 급증이라는 제한적인 요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해당 요인들의 하방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번 세입경정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및 이에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에 집중되어 있음. 추경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본예산 대비 14.8조원(증가율 17.1%), 증권거래세는 5.2조원(증가율 96.5%), 농어촌특별세는 5.1조원(증가율 60.3%) 각각 증액하고 있는데,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주요 기업 실적전망 상향을,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세를 주요 근거로 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목별 증액 경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증액 경정	1	소득세	1,320,208	1,368,179	47,971	3.6
	2	법인세	865,474	1,013,215	147,741	17.1
	3	증권거래세	53,753	105,621	51,868	96.5
	4	농어촌특별세	84,988	136,212	51,223	60.3
합 계			2,324,423	2,623,227	298,803	12.8

자료: 재정경제부

정부는 법인세의 증액 경정에 관해, 반도체 경기개선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수출규모 확대에 따른 실적 전망 상향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고, 증권거래세 역시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시장 거래대금 호조를 근거로 본예산의 2배, 전년 예산의 3배 수준까지 세입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도 증권거래세에 연동하여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세는 기업이익, 업종별 수익변동, 경기순환에 따른 기업행태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세목이고,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변동에 직접 연동되는 거래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증액경정의 상당 부분이 경기 및 자산시장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일부 대외변수의 변화로 인해 증액 경정된 다수의 세목이 동시에 변동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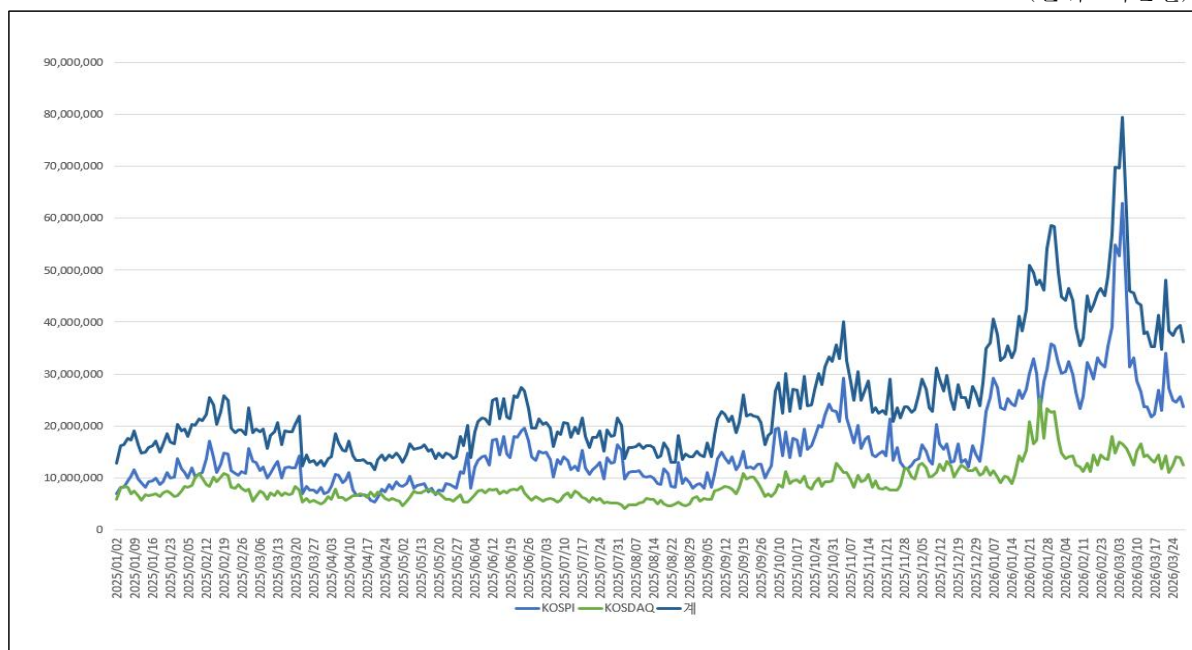
먼저 법인세에 관해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의 법인세는 수출액 자체보다는 제품별 수요·공급구조 변동, 영업이익률 등의 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단기간의 수출 호조만으로

연간 세수를 안정적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점, 정부는 1·2월 반도체기업의 수출실적과 시장전망을 근거로 증액 경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후인 3월 이후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으로 인해 유가·환율·원자재 공급망 등 대외여건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 시점에 가정했던 전제가 장래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주식시장 거래대금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데, 거래대금은 금리·투자심리·대외위험에 따라 단기간에도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참고한 2026년 1·2월의 거래대금은 증가 추세였으나, ① 3월 4일 79.4조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한 후 약 2주 후인 3월 19일에는 거래대금이 56% 이상 급감한 34.7조원으로 나타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② 최근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3월 초를 정점으로 하여 하락하는 추세임. 따라서 특정 기간의 거래 호조를 잔여 연도 전반에 걸쳐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을 증액 반영한 이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이 빠르게 감소할 경우, 해당 세목의 안정적인 세수 실적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유가증권 시장 거래실적 변동 추이(2025.1.1. ~ 2026.3.31.)]

(단위: 백만원)



자료: 한국거래소(<https://data.krx.co.kr/>)

넷째, 예상 초과세수를 연도 중 추경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차년도에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까지 세입 증액경정을 통해 미리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90조²³⁾는 결산상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후 남는 세계잉여금은 일정 부분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다시 일정 부분을 국채 또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한 후 남는 금액만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연도에 발행한 국채의 범위 내에서는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국가재정법 체계의 기본 방향은 초과세수를 먼저 채무상환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활용하고, 그 이후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임.

그런데, 예상 초과세수는 아직 결산상 세계잉여금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세계잉여금 처리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하도록 한 동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초과 세수 중 차년도 국채 상환에 사용될 부분까지 추경 세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음.

특히 이번 세입경정은 향후의 징수 가능성을 전제로 실적치가 아닌 예상 세입증가분을 회계연도 초반부터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성격이며, 세입 증가분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처럼 경기 및 시장 상황에 민감한 세목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세수가 기대에 미달할 경우 채무감축 여력은 줄어든 채 세출만 확대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23)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填)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다섯째, 2021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회계연도 초기에 세입경정을 추진하는 것은 본예산 세수추계의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수오차의 원인과 세수추계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등 세수추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코로나19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3조원, 52.6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6.4조원, 30.8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한 데 이어, 금년에는 연초부터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등 국세수입 추계의 신뢰성과 추계업무의 객관성·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참고: 최근 10년간 세수오차 현황]

(단위: 조원, %)

연도	본예산(A)	세입실적	세수오차(B)	오차율(B/A)
2015	221.1	217.9	△3.2	△1.4
2016	222.9	242.6	19.7	8.8
2017	242.3	265.4	23.1	9.5
2018	268.1	293.6	25.5	9.5
2019	294.8	293.5	△1.3	△0.4
2020	292.0	285.5	△6.5	△2.2
2021	282.7	344.1	61.3	21.7
2022	343.4	395.9	52.6	15.3
2023	400.5	344.1	△56.4	△14.1
2024	367.3	336.5	△30.8	△8.4
2025	382.4	373.9	△8.5	△2.2

특히 ① 전년도 12월에 본예산이 의결된 뒤 3~4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세입 증액경정을 추진하는 것은 본예산 세입의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② 회계연도 초기의 세입경정이 반복될 경우 정기국회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세입추계 오류가 반복될 경우 재정의 효율적 운용, 국가 경제의 안정,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수오차의 발생 원인과 세수추계 업무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세수추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2) 국세수입 경정규모의 적정성 검토(총괄: 세입, 세제실)

< 현 황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근로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4개 세목을 총 29.9조원 증액경정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3개 세목을 총 4.7조원 감액경정하여 총 25.2조원을 증액경정하려는 것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세수입 세목별 경정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6년 세입예산액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총 국세			3,902,334	4,154,190	251,856	6.5
증액 세목	1.	근로소득세	684,511	732,482	47,971	7.0
	2.	법인세	865,474	1,013,215	147,741	17.1
	3.	증권거래세	53,753	105,621	51,868	96.5
	4.	농특세	84,988	136,212	51,223	60.3
감액 세목	5.	개별소비세	94,344	89,004	△5,340	△5.7
	6.	교통세	164,122	130,464	△33,658	△20.5
	7.	교육세	64,433	56,484	△7,949	△12.3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이번 추경안의 국세수입 경정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세입경정 대상에 포함된 일부 세목 경정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이번 추경안에서 세입예산액이 증액된 법인세는 3월 31일에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금액이 집계되기 전에 세수가 추계되어 추경안이 제출되었는데, 3월 말 법인세 신고 실적이 집계되면 보다 정교한 법인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재정경제부는 법인세 세입예산액을 본예산 대비 14조 7,741억원 증액하였음.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과 비교하면 신고분 중 자납분²⁴⁾ 2조 9,071억원이 증액되고 중간예납분²⁵⁾이 11조 3,676억원 증액되었음.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었던 세정효율화²⁶⁾ 9,600억원은 전액 감액하였음. 원천분²⁷⁾은 2026년 2월까지의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1조 4,594억원 증액되었음.

[법인세 세입경정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5년 실적	2026년 본예산(A)	2026년 추경안(B)	증감액 (B-A)
신고분(a)	609,029	633,653	766,801	133,148
-자납분		301,979	331,050	29,071
-중간예납분		290,316	403,992	113,676
-고지분		34,251	34,251	-
-세법개정		△2,493	△2,492	△1
-세정효율화		9,600	-	△9,600
원천분(b)	237,061	231,821	246,415	14,594
합계(a+b)	846,090	865,474	1,013,215	147,741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반도체 경기개선을 고려하여 법인세 자납분과 중간예납액을 증액하였는데,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인세 세입예산액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²⁸⁾

그러나 추경안은 202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년 3월 말 이전에 편성되었는데, 기업의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완료되면 자납분(2026년 3월 말 신고·납부)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고, 중간예납분(2026년 8월 말 신고·납부)에 대한 추계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임.

24) 자납분은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2026년 3월 말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지고, 분납세액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일반법인) 및 2개월 이내(중소기업) 이루어짐.

25) 중간예납분은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2026년 8월 말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짐

26) 세정효율화는 성실신고 지원, 신고 사후관리 및 체납관리 등을 통해 납부되는 세수임

27) 법인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분

28) 삼성전자의 2025년 영업이익은 4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9조원 증가하였고, SK 하이닉스의 2025년 영업이익은 47.2조원으로 전년 대비 23.7조원 증가하였음.

중간예납분의 계산방법은 ①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직전연도 실적 기준)과 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가결산 기준)이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은 가결산 기준으로 2026년 실적에 따라 2026년 중간예납액을 납부해야 하고, 그 외 법인은 직전연도 실적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선택하여 중간예납을 할 수 있음.²⁹⁾

가결산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기업의 2026년도 중간예납분을 추계하는 경우, 3월 말 법인세 신고 정보에서 2025년도 영업실적 및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면 2026년도 과세표준에 대한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음. 또한, 직전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분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3월 말 법인세 신고 정보에서 2025년도 귀속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이번 추경안에서 증액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에 대해서는 투자심리 악화로 증권거래가 둔화되는 하방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증권거래세 세입예산액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당초 예상보다 증권거래대금이 크게 증가된 점을 고려하여 증액되었고,³⁰⁾ 농특세 세입예산액도 함께 증액되었음.³¹⁾ 재정경제부는 본예산 편성 시 2026년 코스피 거래대금을 3,188조원으로 전망하고 코스닥 거래대금을 2,055조원으로 전망했으나, 코스피 거래대금 전망치를 7,203조원으로 수정하고 코스닥 거래대금 전망치를 3,624조원을 수정하였음. 그리고 이를 반영하여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세입예산액을 증액하였음.

[2026년 증권거래대금(연간) 전망치 수정 내역]

(단위: 조원)

구 분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전망치(A)	2026년 추경안 편성 시 전망치(B)	증감 (B-A)	증감률 (B-A)/A
코스피 증권거래대금	3,188	7,203	3,835	120.3%
코스닥 증권거래대금	2,055	3,624	1,569	76.4%

자료: 재정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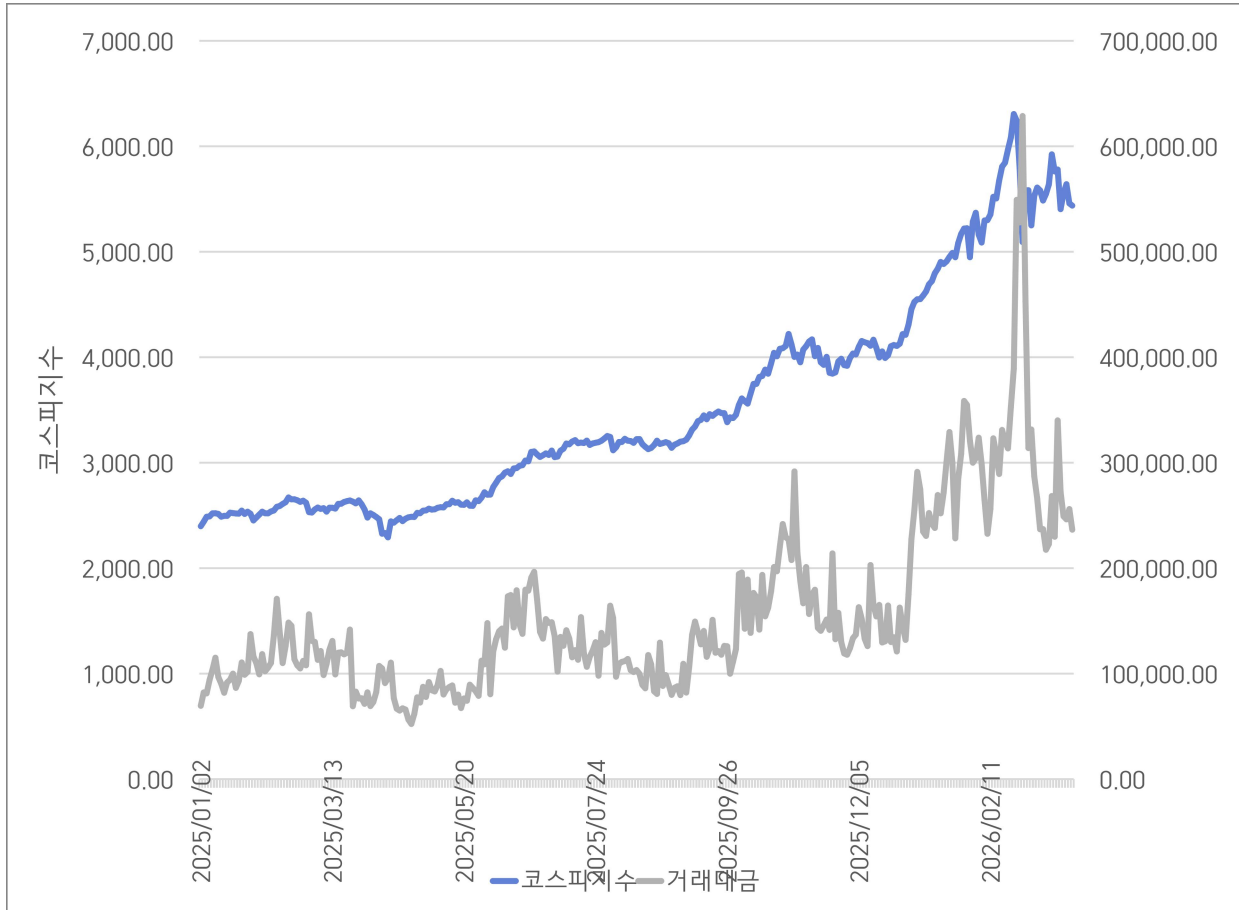
29)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전인 2024년에는 총 법인 중 83.1%가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을 신고·납부하고, 16.9%가 가결산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을 신고·납부하였음.

30) 2026년도 증권거래세 세입예산액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의 거래금액에 대해 부과된 세금으로 구성됨.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율 0.05%가 적용되고, 코스닥 증권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율 0.20%가 적용됨.

31) 농특세는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대해 0.15%의 세율이 적용됨.

실제로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의 상승으로 증권거래가 촉발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

[2025년 1월~2026년 3월 코스피 지수 및 거래대금 추이]



주)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이루어진 거래 기준이며, 단위는 '억원'임

2025년 일평균 거래대금은 코스피 16조 6,248억원·코스닥 9조 2,710억원인데, 2026년은 1월 기준 코스피 40조 9,989억원·코스닥 21조 3,210억원, 2월 기준 코스피 50조 771억원·코스닥 18조 9,635억원으로 거래가 활발함. 재정경제부의 2026년도 연간 코스피 및 코스닥 거래대금 전망치를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계산하면,³²⁾ 코스피는 29조 5,205억원이고 코스닥은 14조 8,525억원임.

32) 2026년 증시 개장일을 244일로 가정하였음

[2025년~2026년 2월 일평균 증권거래대금 추이 및 전망치와 비교]

(단위: 억원)

구분	실적			재정부 전망치
	2025년 일평균	2026.1월 일평균	2026.2월 일평균	2026년 일평균
코스피 거래대금	166,248	409,989	500,771	295,205
코스닥 거래대금	92,710	213,210	189,635	148,52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한국거래소 발간자료 재구성

다만, 2025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 상승이 둔화되는 경우에는 코스피 및 코스닥 증권거래가 둔화되는 세수의 하방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이후의 코스피 지수 및 코스닥 지수의 등락을 살펴보면 2026년 1월까지 지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졌으나, 그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 2026년 2월 27일에 장중 코스피 지수가 6,347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3월 31일에는 5,052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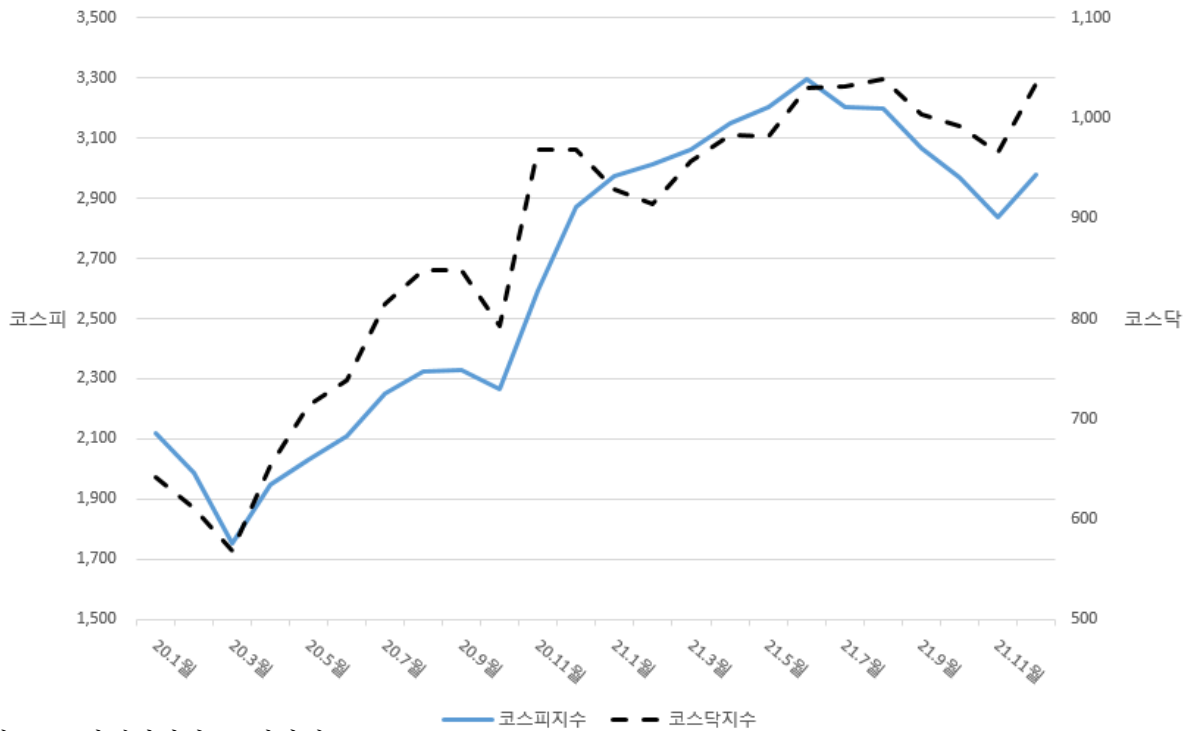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금리인상 우려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이 존재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둔화되는 경우에는 연초와 같은 활발한 증권시장 거래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연간 증권거래대금 실적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코스피 연간 거래대금이 3,825조원을 기록하고 코스닥 연간 거래대금이 2,942조원을 기록하였음

해당 시기의 월별 일평균 증권거래대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초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급락한 이후 2020년 3월부터 지수가 급격히 상승했음. 이때 지수 상승과 함께 2020년 중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2021년 1월에 최고치(코스피 일평균 26조 4,778억원, 코스닥 일평균 15조 6,186억원)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21년에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둔화되면서 일평균 거래대금은 하락추세로 전환하여 2021년 12월에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2021년 12월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 9,195억원으로서 1월 대비 62.5% 감소했고,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조 2,228억원으로서 1월 대비 28.1% 감소했음.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2021년 연간 증권거래대금은 코스피 3,825조원(전년대비 20.9% 증가)과 코스닥 2,942조원(전년대비 8.8% 증가)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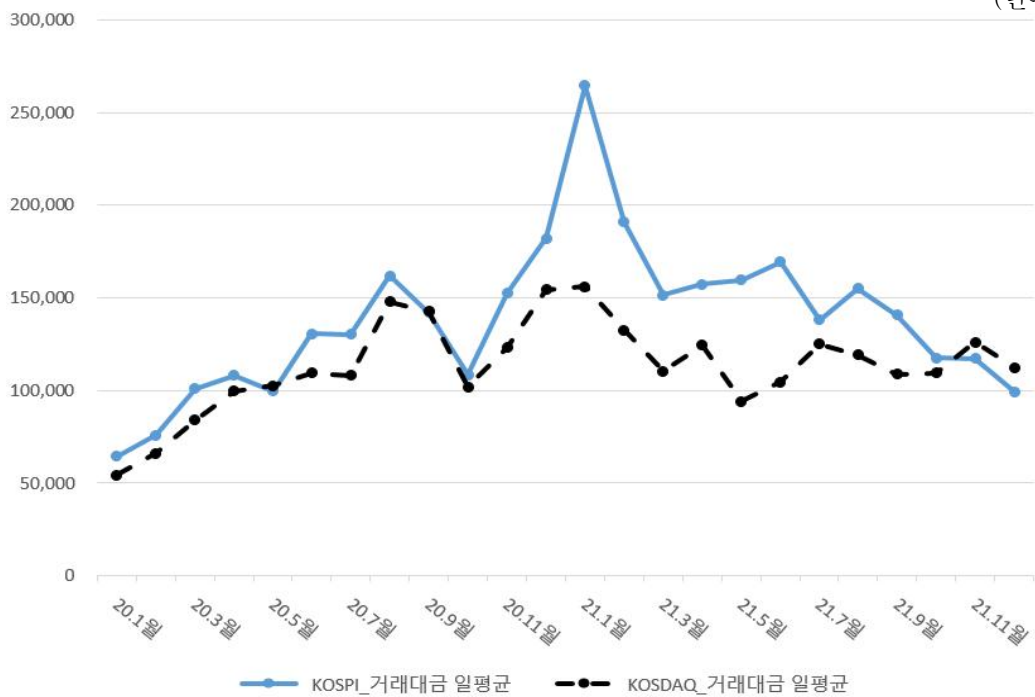
[2020년 1월~2021년 12월 월별 코스피지수 및 코스닥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e-나라지표

[2020년 1월~2021년 12월 월별 일평균 증권거래대금 추이]

(단위: 억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따라서, 코스피지수 및 코스닥지수의 급격한 상승이 둔화되면 2021년의 사례처럼 증권거래가 둔화될 수 있으므로, 증권거래세 및 농특세 세수의 하방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일반회계·기금 간 예탁금 조정의 투명성 강화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 국고실)

< 현 황 >

2026년도 추경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규모를 조정하여 회계 간 자금 재배분이 이루어졌음. 일반회계 예탁금은 본예산 108조 3,041억원에서 2조 7,613억 4,800만원(△2.5%)이 감액된 105조 5,427억원이 편성된 반면, 기타기금 예탁금은 본예산 39조 8,104억원에서 8,244억 7,800만원(2.1%)이 증액된 40조 6,349억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탁금은 본예산 2조 9,125억원에서 3,062억 700만원(10.5%)이 증액된 3조 2,187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자기금 예탁금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2026년			증 감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기타기금 예탁 (9020-900)	44,477,199	45,033,785	39,810,441	39,810,441	40,634,919	824,478	2.07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 (9920-920)	904,817	915,666	750,900	750,900	745,211	△5,689	△0.76
일반회계 예탁 (8520-851)	82,765,297	114,948,803	108,304,108	108,304,108	105,542,760	△2,761,348	△2.55
특별회계 예탁 (8540-853)	2,766,163	3,310,377	2,912,541	2,912,541	3,218,748	306,207	10.51

<검토의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의 증감은 회계 간 자금 이동에 따른 내부거래로서 회계 간 자금 여건을 반영한 재원 재배분 조정으로 볼 수 있으나, 공자기금 내부거래의 단일 프로그램 구조로 인해 예탁금 증감에 따른 실제 재원 배분 내역이 불투명하므로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사업 등 배분 내역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추경안에서 일반회계와 기금 및 특별회계 간 예탁금의 증감은 회계 간 자금 이동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로서, 정부 전체의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은 아님.

금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예탁금을 감액하는 한편 기타기금 및 특별회계 예탁금을 증액한 것은, 회계 간 자금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재원을 재배분하려는 조정으로 볼 수 있음. 일반회계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 주요 세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기존 예탁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재원 수요가 있는 기금 및 특별회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 것으로 보임.

[2026년 1차 추경안 일반회계 세입 증가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6년 본예산	정부안		'26년 1회 추경안	비고
		증액	감액		
소득세(원천분)	88,966,007	4,797,094		93,763,101	일반수입
법인세	86,547,444	14,774,094		101,321,538	일반수입
증권거래세	5,375,303	5,186,782		10,562,085	일반수입

공자기금 내에서 이러한 일반회계와 기금·특별회계간 예탁금의 조정은 정부 전체의 지출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회계 및 기금 간의 자금 흐름을 최적화하여 일반회계의 이자 부담을 일부 줄이고,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재원을 재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내부거래는 단일 프로그램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예탁금 조정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실제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어떤 세부 사업에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금별·사업별 자금 배분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개별사업 규모의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금·특별회계 예탁금이 추가로 변동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금리 예측의 정확성 제고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상환, 국고실)

< 현 황 >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액 34조 3,154억 7,900만원 대비 1,066억원(0.3%) 증액된 34조 4,220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고채 이자상환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2026년			증 감	
	당초	수정	당초	현재액(A)	변경안(B)	(B-A)	(B-A)/A
국고채 이자상환 (1071-780)	29,977,898	30,469,038	34,315,479	34,315,479	34,422,079	106,600	0.3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재정경제부는 기준금리 전망, 국채 수급 여건 및 실제 발행금리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고채 금리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기금운용계획의 변동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제1차 추경안에서 재정경제부는 금리 상승의 단기적 영향을 반영하여 이자 부족분을 산출하였으며, 단기물(2·3·5·10년물) 중심의 금리 상승을 가정하고 단기물 예상 발행액 106.6조 원에 실제 가중평균금리(3.4%)와 편성금리(3.0%) 간 차이 및 이자지급기간 3개월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액 규모를 산출하였음.

[국고채 이자상환 추경안 편성 산출근거]

- 국고채 실제 발행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금액(예상 부족분) 증액
- 국고채 금리 상승의 단기물(2·3·5·10년물) 중심 단기적 영향 가정(단기물 예상 발행액(106.6조원) × (단기물 가중평균금리(3.4%)-편성금리(3.0%)) × 이자지급기간(3/12개월))

자료: 재정경제부

실제로, 2026년 국고채 월별 평균 조달금리는 1월 3.18%, 2월 3.40%, 3월 3.50%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초 2026년 예산 편성 시 적용된 3.0%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번 추경에서 국고채 이자상환액의 증액은 실제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최근 국고채 월별 평균 조달금리 현황]

(단위: %)

2025												202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72	2.69	2.65	2.56	2.47	2.64	2.60	2.55	2.61	2.68	3.01	3.15	3.18	3.40	3.50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국고채 월별 신규발행 실적 및 조달금리 현황]

(단위: 억원, %, %p)

구분	1월	2월	3월	1분기 합계(A)	당초 계획안(B)	차이 (B-A)
국고채 발행금액	178,690	224,480	212,020	615,460 ³³⁾	-	-
평균 조달금리	3.18	3.40	3.50	-	-	-
이자소요액 (C=A×B×6개월)	-	-	-	-	-	-

자료: 재정경제부

33)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현재 국고채 전체 규모는 1,189.3조원(일반회계 적자국채 901.8조원, 기금·특별회계 예탁금은 289.8조원)이며, 2026년도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61.5조원으로 이 중 적자보전용 순발행은 29.9조원, 차환용은 31.7조원임.

다만, 이러한 금리 상승이 단기적 요인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과 국채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재정경제부는 금리 변동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금리변화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함으로써 재정 부담의 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는 자금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국채 금리를 실제 예상 금리보다 일정 부분 높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보수적 편성으로 인해 매년 적지않은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금리 차이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4,900억 원을 연말에 감액 조정한 사례가 있고, 2025년에도 1,95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상승에 대응한 증액 자체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고채 이자상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1	20,210,096	18,887,773	-	18,887,773	18,225,615	-	662,158
2022	20,707,047	20,707,047	-	20,707,047	20,120,245	-	586,802
2023	24,811,837	24,811,837	-	24,811,837	24,030,807	-	781,030
2024	28,259,942	27,769,942	-	27,769,942	27,724,637	-	45,305
2025	29,977,898	30,469,898	-	30,469,898	30,273,698	-	195,340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한 국고채 이자상환액 증액은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지출 증액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과 과거 반복된 불용 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재정경제부는 금리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증액 규모를 보다 정교히 산정하여 과다한 자원 배분 및 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5) 지방채 인수 규모에 대한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 인수(융자), 국고실)

< 현 황 >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장기저리로 인수하여 지자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당초 계획액 1,000억 대비 1,000억원(100.0%) 증액된 2,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채 인수(융자)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		2026년			증 감	
	당초	수정	당초	현재확(A)	변경안(B)	(B-A)	(B-A)/A
지방채 인수 (융자) (1031-100)	10,000	1,210,000	1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0

자료: 재정경제부

< 검토의견 >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심사 결과를 재정경제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연계하고, 인수 규모 산정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에서 당초 계획액인 1,000억원에 10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증액하여 2,000억원을 편성하면서 동 증액분 편성의 산출 근거로 행정통합 지원 관련 지자체 수요조사를 제시하였음.

참고로, 2026년 3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행정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동 사업의 지방채 인수 증액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지방채 인수(융자) 추경안 편성 산출근거]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지방채 인수 수요조사 결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서 제출한 관련 수요(약 1,000억원) 및 '26 본예산 규모(1,000억원) 감안

자료: 재정경제부

다만, 지방채 인수 사업은 그 규모의 산정에 있어서 산출 근거의 정확성에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재정경제부는 2026년 예산안 산출 시에도 행안부 수요조사를 근거로 1천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

[지방채 인수(융자) 2026년도 계획안 산출근거]

행안부 수요조사를 토대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천억원 편성

자료: 재정경제부

[2026년 예산안 지방채 인수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단위: 억원)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55,949	11,329	3,898	2,857	4,985	3,699	1,700	200	73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448	1,891	1,866	3,567	4,881	2,271	1,200	1,136	2,285

자료: 재정경제부

지방채 인수 사업은 최근 연도별 규모의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바, 사업비가 2022년과 2023년 각각 1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2조 6,000억원으로 급증한 이후 2025년 1조 2,100억원, 2026년 1,000억원으로 다시 크게 감소하는 등 연도별 편성 규모의 편차가 존재함.

이러한 변동성은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는 지방채 인수 사업의 객관적인 규모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최근 5년간 지방채 인수(융자) 투입 사업비]

(단위: 억 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3월 현재)
사업비	100	100	26,000	12,100	1,000
집행	79	100	25,962	10,712	38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³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행한도 및 계획 수립기준을 통보하고(∼7.1),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발행 예정액(∼7.15) 및 발행계획을 제출하면(∼8.31), 행정안전부가 재무적 안정성, 사업의 타당성 및 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방채 인수(융자) 사업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지자체 수요조사를 참고하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총규모를 우선 결정한 후, 배분 단계에서 개별 지자체에 대한 배정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사전적 타당성 검토 결과가 재정경제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동 사업에 2025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 당시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수요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따라서, 재정경제부는 지방채 인수 규모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4)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⑧ 생략

국세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국세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조 977억 9,400만원보다 2,133억 6,400만원 증가한 2조 3,111억 5,800만원임.

세출예산안 증액분 2,133억 6,400만원은 압류재산 공매 1개 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안) (A)	증감액 (B-A)	증감률 (B-A)/A
압류재산 공매(2232-301)	14,868	228,232	213,364	1,435.1
총계(전체)	2,097,794	2,311,158	213,364	10.2

자료: 국세청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국세 체납자 실태확인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26년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2,500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634억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 부처에서 개별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7,000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1,499억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2026년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사업별·비목별 증액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A)	추가경정예산(안) (B)	증감액 (B-A)	주요 증액비목
압류재산공매	14,868	228,232	213,364	
(국세 체납관리단)	10,054	73,456	63,402	· 일용임금, 임차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149,962	149,962	· 일용임금, 임차료 등
총계(전체)	14,868	228,232	213,364	

자료: 국세청

2. 검토의견

(1) 본예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증원 (일반회계: 국세 체납관리단, 징세법무국)

< 현 황 >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133억 6,400만원 증가한 2,28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634억 200만원(630.6%) 증액된 73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압류재산 공매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압류재산 공매(2232-301)	4,254	4,254	14,868	228,232	213,364	1,435.1
- 국세 체납관리단	-	-	10,054	73,456	63,402	630.6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총 3년간(’26년~’28년) 모든 체납자(’24년 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하는 사업임.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체납자를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 생계 곤란형 체납자 등 유형별로 분류함. 이후 분류된 유형에 따라 분납 등 납부안내, 추적조사, 경제활동 재기 지원 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실시함.

[채납자 유형분류 및 조치사항]

구 분	유 형	조치사항
일시적 납부곤란자	일시적 어려움으로 채납 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 가능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등 납부유도
고의적 납부기피자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 회피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생계 곤란형 채납자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납액 납부 곤란	납부의무 소멸,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실시

자료: 국세청

2026년도 본예산에는 실태확인원 400명을 채용하고 채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69억 2,500만원, 임차료 22억 2,600만원, 운영비 9억 300만원 등 총 100억 5,400만원이 반영되었음.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500명³⁵⁾의 실태확인원 외에 추가로 2,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 국세 채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인건비 383억 8,100만원, 임차료 91억 5,800만원, 자산취득비 35억 6,900만원 등 총 634억 200만원이 증액된 734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국세 채납관리단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세목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증액규모	주요 증액사항
총계	10,054	73,456	63,402	
일용임금	6,272	40,961	34,689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
고용부담금	653	4,345	3,692	
임차료	2,226	11,384	9,158	사무실 추가 임차
일반수용비	66	1,089	1,023	
공공요금 및 제세	107	3,169	3,062	전화 및 네트워크회선 요금
피복비	23	160	137	
유류비	250	589	339	
관리용역비	200	1,298	1,098	사무실 추가 임차
사업추진비	7	77	70	
공사비	250	3,543	3,293	
국내여비	-	2,500	2,500	
일반용역비	-	772	772	채용 위탁
자산취득비	-	3,569	3,569	네트워크 및 전화통신 장비

35) 예산 편성 당시 400명의 실태확인원 채용비용이 반영되었으나, 국세청은 임의로 100명을 증원하여 채용함.

< 검토의견 >

국세청은 이미 본예산 계획 대비 100명의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이하 “실태확인원”)를 추가 채용하였고, 실태확인원 채용 이후 약 한 달 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 실태확인원 채용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태확인원 증원에 따른 동행공무원의 추가 차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다른 세정업무의 공백이 우려되고, 채용 결과 실태확인원 대다수가 고령자로 확인되었으며, 실태확인원 채용 위탁기관 선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실태확인원 채용기간이 계획 대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첫째, 국세청은 이미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00명의 실태확인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였고,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의 정책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원 대비 500%를 추가 증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본예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당초 정부는 8개월간 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자 125억 4,7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 결과 활동기간은 유지하되 채용규모를 100명 축소하여 정부안 대비 24억 9,300만원을 감액한 100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음.

이에 국세청은 당초 8개월간³⁶⁾ 활동할 400명의 실태확인원(전화실태확인원 100명, 방문실태확인원 300명³⁷⁾)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채용공고 시에는 6개월~7개월간³⁸⁾ 활동할 500명(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 결과와 달리 100명의 실태확인원을 추가 채용하였음.

36) 활동기간: 2월 26일부터 11월 25일(혹서기 7월 20일부터 8월 14일 제외)

37)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을 말한다.
4. "전화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에게 전화통화 방법으로 방문상담을 위한 체납사실 안내, 방문 사전안내, 방문 일정 협의, 납부안내, 체납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5. "방문실태확인원"이란 체납자의 주소지(거소지 포함한다)·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8) 활동기간: 2월 26일부터 10월 8일(혹서기 7월 20일부터 8월 14일 제외)

한편, 실태확인원 공개채용 절차가 2월 말에 마무리되었고, 채용된 실태확인원은 3월 초부터 국세청 공무원을 보조하여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직 실태확인원의 추가 채용 필요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인 실적이 산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태확인원 또는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등 정성적 자료마저 부재한 상황임.

참고로 동 사업의 근거 법률인 「국세징수법」 개정 당시 기획재정위원회(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이 운영하고자 하는 실태확인을 2026년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제세 체납자,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 위주로 실시하고 해당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 체납관리단의 효과성에 대한 성과 확인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500명을 추가하는 것은 부대의견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³⁹⁾

또한, 국회는 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고자 했던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400명 규모로 조정하여 의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태확인원 근무 개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원 대비 500%인 2,500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본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둘째, 방문실태확인원 증원규모에 비하여 동행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세무서별 체납관리팀 및 타 부서 공무원의 차출에 따라 체납자 실태확인 외 다른 핵심 세정업무의 공백 등이 우려되고, 국세청은 제도 정착 이후 공무원의 동행 없이 방문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실태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국세청은 올해 초 375명의 방문실태확인원을 채용하였고, 현재 동행공무원 1인과 방문 실태확인원 2인이 3인 1조로 함께 체납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체납 사유, 납부능력, 생활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음.⁴⁰⁾

3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5」

40)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운영담당자"란 국세 체납관리단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직무교육·관리, 예산집행, 민원처리, 실적보고 등 실태확인 총괄, 복지연계 업무수행 등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관리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7. "동행공무원"이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호, 안전·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8. "체납담당공무원"이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및 제204조에 따라 세무서 징세과와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체납추적팀)의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국세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 (조직구성 및 설치) ③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과 원활한 업무수행, 개인정보 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방문실태확인원 1,875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음.

[지방국세청별 방문실태확인원 증원계획]

(단위: 명)

구분	방문실태확인원		
	현원	증원규모	합계
합계	375	1,875	2,250
서울지방국세청	69	324	393
중부지방국세청	75	432	507
원주세무서	12	-	12
부산지방국세청	60	276	336
인천지방국세청	63	330	393
대전지방국세청	36	204	240
광주지방국세청	30	159	189
대구지방국세청	30	150	180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188명의 동행공무원이 각각 방문실태확인원 2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방문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신규 실태확인원 채용 이후에는 기존 방문 실태확인원 3인이 1개 팀을 이루어 공무원의 동행 없이 방문 실태확인을 수행할 계획임.

또한, 신규 실태확인원 1,875명의 경우에는 채용 이후 초기에는 실태확인원 2~3인당 1명의 공무원이 동행하여 실태확인 시범을 보일 계획이고, 8월 이후부터는 신규 실태확인원 1,875명 역시 3인 1조로 공무원의 동행 없이 방문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임.

이때 188명의 동행공무원으로는 모든 신규 실태확인원을 동행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세무서 소속 체납담당공무원이 동행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2026년 국세 체납자 방문실태확인 운영계획]

구분	실태확인원	팀(구성원)
현재	기존 실태확인원 375명	188팀(공무원 1인, 기존 실태확인원 2인)
7월	기존 실태확인원 375명, 신규 실태확인원 1,875명	125팀(기존 실태확인원 3인) + 625팀 이상(공무원 1인, 신규 실태확인원 2~3인)
8월 이후		750팀(실태확인원 3인)

자료: 국세청

다만, 세무서 체납추적팀은 단순한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 외에도 압류, 공매 등 직접적인 국세징수 권한을 행사하고 세입금과 환급금을 관리하는 등 고유의 업무가 존재함.

호, 안전·보안사고 방지 등을 위해 국세공무원을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시켜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실태확인 절차 및 방법) ⑦ 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직규모 대비 지나치게 많은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여 체납담당 공무원 대다수가 실태확인 업무에 동원될 경우 실제 체납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만약 공무원 동행기간이 계획보다 길어지거나 인원이 부족하여 타 부서 직원의 추가 차출까지 이루어질 경우 국세 부과 및 징수, 납세자 보호 및 지원 등 핵심 세정업무의 공백 및 1인당 업무부담 가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세청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8월 이후부터는 공무원의 동행 없이 실태확인원 3인이 1개 팀을 이루어 체납자 방문 실태확인을 수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인데, 세무공무원이 아닌 민간 실태확인원이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입,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체납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민간인인 실태확인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등 실태조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셋째, 현재 전화실태확인원의 일일 업무량이 저조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업무량 조정을 전제로 채용인원을 감축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태확인원 증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올해 초 125명의 전화실태확인원을 채용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25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지방국세청별 전화실태확인원 증원계획]

(단위: 명)

구분	전화실태확인원		
	현원	증원규모	합계
합계	125	625	750
서울지방국세청	23	108	131
중부지방국세청	25	144	169
원주세무서	4	-	4
부산지방국세청	20	92	112
인천지방국세청	21	110	131
대전지방국세청	12	68	80
광주지방국세청	10	53	63
대구지방국세청	10	50	60

자료: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전화실태확인원 1인당 일평균 통화건수는 13.5건에 불과함. 반면, 동일 세무사업 내 「국세외수입 체납징수단」사업의 경우 전화실태확인원 1인당 일평균 49건의 전화상담을 할 것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국세 체납관리단 전화실태확인원의 1일 업무량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전화실태확인원 채용인원 산출내역]

▶ <u>전화상담원 1인당 1일 49명, 3회 통화 시 1,159만 건 가능</u>			
- (6월 전화상담원) 49건 × 120일 × 1,200명(40%) =	705만 건		
- (9월 전화상담원) 49건 × 58일 × <u>1,600명(40%) =</u>	<u>454만 건</u>		
	2,800명	1,159만 건	

자료: 국세청

따라서 전화실태확인원 625명을 신규 채용하기보다 기존 전화실태확인원의 일일 통화 건수를 늘리고 전화실태확인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국세청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채용 결과 은퇴자와 고령자에 고용이 편중되는 등 균형 있는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국세 체납관리단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인 ‘청년 대상 가치창출형 일자리 창출’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올해 2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500명을 채용한 결과 전체 실태확인원 중 청년은 19.0%, 경력단절여성은 25.8%를 차지한 반면 은퇴자 비율은 65.4%에 달하였음.

특히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중 60대 이상이 51.7%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균형 있는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가치창출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는데, 실태확인원 채용 실적을 보면 해당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구성비율]

(단위: 명, %)

구분	청년 ¹⁾	경력단절여성 ²⁾	장애인	국가유공자 ³⁾	은퇴자	40대·50대 남성	총계
실태 확인원	95 (19.0%)	129 (25.8%)	16 (3.2%)	38 (7.6%)	327 (65.4%)	65 (13.0%)	500 (100.0%)

1) 청년 : 20대~30대

2) 경력단절여성 : 35세~60세 여성

3)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연령대 및 성비]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남성	23	31	14	51	186	7	312
여성	19	22	42	62	42	1	188
계	42(8.4%)	53(10.6%)	56(11.2%)	113(22.6%)	228(45.6%)	8(1.6%)	500(100.0%)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방문실태확인원 연령대 및 성비]

(단위: 명,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성	18	30	13	50	172	5	288
여성	9	6	21	34	17	-	87
계	27(7.2%)	36(9.6%)	34(9.1%)	84(22.4%)	189(50.4%)	5(1.3%)	375(100.0%)

자료: 국세청

다섯째, 실태확인원 채용 위탁기관 선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실태확인원의 실제 업무 수행은 기존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기간과 연동된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신규 실태확인원에 대한 6개월(2026. 7. 1. ~ 12. 23.) 치 인건비와 기존 실태확인원 임금 인상분 등 본예산 대비 346억 8,900만원 증액된 409억 6,100만원의 일용임금이 편성되었고, 7개월(2026. 6. 1. ~ 12. 31.) 간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56억원을 증액한 68억 9,600만원의 사무실 임차료 예산이 반영되었음. 또한, 2,500명의 실태확인원 채용 위탁을 위한 일반용역비 6억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국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예산]

구분	금액	산출내역
본예산	62억 7,200만원	400명의 실태확인원을 8개월간 고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급여,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추경안	409억 6,100만원	기존 500명의 실태확인원 임금인상분 + 신규 2,500명의 실태확인원을 6개월(2026. 7. 1. ~ 12. 23.)간 고용함에 따라 소요되는 급여,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주: 본예산에는 8개월간 400명의 실태확인원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었으나, 국세청은 실태확인원 고용규모를 500명으로 늘리고 고용기간을 6~7개월로 단축하였음.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사무실 임차료 예산]

구분	금액	산출내역
본예산	12억 9,600만원	1억 1,782만원(7개 지방국세청 한달 임차료) * 11개월
추경안	68억 9,600만원	12억 9,600만원 + 8억원(7개 지방국세청 한달 임차료) * 7개월(2026. 6. 1. ~ 12. 31.)

자료: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채용 위탁 용역비]

구분	금액	산출내역
본예산	-	-
추경안	6억원	서류 및 면접전형 등 채용 위탁비용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5월 1일에 신규 실태확인원에 대한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채용 및 교육 절차를 거쳐 7월 8일부터 신규 실태확인원을 실제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채용 위탁기관 공고 및 선정에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실태확인원의 실제 업무수행은 기존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임.

[실태확인원 채용일정 및 근무기간]

	채용공고	합격공고	교육기간	근무개시	근무종료
기존 실태확인원 (500명)	1. 12.	2. 23.	2. 26. ~ 3. 4.	3. 5.	10. 8.
신규 실태확인원 (2,500명)	5. 1.	6. 23.	7. 1. ~ 7. 7.	7. 8.	12. 23.

주: 신규 실태확인원의 경우 업무 투입 이후 첫 2주 동안은 교육과 업무를 병행할 계획임

자료: 국세청

따라서 현행 사무실 임차기간(2026. 6. 1. ~ 12. 31., 7개월)을 적정 기간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채용기간과 연동된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관련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법률 개정과 연동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일반회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징세법무국)

< 현 황 >

「압류재산 공매」는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133억 6,400만원 증가한 2,28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조직을 설치·운영하여 국세외수입 납부의무자 중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1,499억 6,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압류재산 공매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압류재산 공매(2232-301)	4,254	4,254	14,868	228,232	213,364	1,435.1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	-	-	149,962	149,962	순증

자료: 국세청

국세외수입이란 국가의 수입 중 조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으로, 벌금 및 과료(科料), 과징금, 과태료, 몰수금 및 추징금, 법정부담금, 건물 및 토지 대여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관유물대여료, 기타잡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미곡판매수입, 변상금, 위약금, 부산물기타판매수입료, 징계부가금, 피고용자분담금, 고용주부담금, 항공항만수입 등을 의미함.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84.3조원 중 미수납액이 25.1조원에 달하고, 체납액은 16.2조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5년간 국세외수입 현황]

(단위: 조원)

연도	징수결정액 ¹⁾	수납액	불납결손액 ²⁾	미수납액 ³⁾		
				합계	체납 ⁴⁾	납기미도래
2024	284.3	257.8	1.4	25.1	16.2	8.9
2023	254.7	229.6	1.1	24.0	15.9	8.1
2022	245.5	221.5	1.2	22.8	14.5	8.3
2021	248.6	226.3	1.3	21.0	14.1	6.9
2020	213.7	193.2	1.4	19.1	13.3	5.8

- 1) 징수결정액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 전년도 미수납액
 2)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납할 수 없는 금액
 3) 징수·결정 고지된 금액 중 국고 미납 금액
 4) 납부 기한이 지난 상태의 금액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규모의 지속적 증가, 국세외수입별 관리주체 분산에 따른 체납자 정보 통합관리 및 체계적 대응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12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였음.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의 사전단계로서 국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 시민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과태료, 과징금 등 국세외수입을 체납한 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실태확인을 통해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 체납자를 일시적 납부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 생계 곤란형 체납자 등 유형을 분류하며,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등을 실시할 계획임.

국세청은 올해 6월에 1차로 3,000명(전화실태확인원 1,200명, 방문실태확인원 1,800명)을 채용하고, 이후 9월에 2차로 4,000명(전화실태확인원 1,600명, 방문실태확인원 2,4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임.

[지방국세청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배정계획]

(단위: 명)

구분	전화실태확인원			방문실태확인원		
	1차	2차	합계	1차	2차	합계
합계	1,200	1,600	2,800	1,800	2,400	4,200
서울지방국세청	200	280	480	300	420	720
중부지방국세청	240	320	560	360	480	840
부산지방국세청	200	240	440	300	360	660
인천지방국세청	120	160	280	180	240	420
대전지방국세청	120	200	320	180	300	480
광주지방국세청	200	240	440	300	360	660
대구지방국세청	120	160	280	180	240	420

주: 1차 채용 실태확인원의 근무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이고, 2차 채용 실태확인원의 근무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임.

자료: 국세청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총 7,0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944억 500만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임차료 159억 8,600만원 등 총 1,499억 6,200만원이 반영되었음.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세목	예산	주요 산출내역
총계	149,962	
일용임금	85,185	실태확인원 급여: (1차) 3,000명×156일×8시간×12,250원= 45,864백만원 (2차) 4,000명×74일×8시간×12,250원 = 29,008백만원
고용부담금	9,220	
임차료	15,986	사무실 임차료: (1차) 30백만원×30개 사무실×7개월= 6,300백만원 (2차) 30백만원×40개 사무실×4개월= 4,800백만원
일반수용비	1,899	
공공요금 및 제세	6,815	
피복비	326	
유류비	135	
관리용역비	2,198	
사업추진비	140	
공사비	13,546	사무실 공사비: (1차) 3,040천원×1,948명= 5,922백만원 (2차) 3,040천원×2,508명= 7,624백만원 * 3,040천원: 공사비용(2,400천원)+철거비용(640천원)
국내여비	3,434	
일반용역비	1,702	채용위탁용역비: (1차) 3,000명: 200백만원(서류)+450백만원(면접)= 650백만원 (2차) 4,000명: 250백만원(서류)+500백만원(면접)= 750백만원
자산취득비	9,376	전화통신장비: (1차) 51,209천원(1개호당 장비)×30개호실= 1,537백만원 (2차) 51,209천원(1개호당 장비)×40개호실= 2,048백만원

자료: 국세청

< 검토의견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민간 인력을 채용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실태를 확인하려는 사업인 반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실태확인 대상이 되는 국세외수입의 범위가 법률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에 맞추어 예산 규모가 연동될 필요가 있으며, 조직규모 및 역량 대비 과도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세의 부과·징수라는 국세청 본연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방안 또는 관련 법령 마련 및 조직 정비 등을 선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고 그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확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결의원안, 2026. 1. 30. 발의, 의안번호 제164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임.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64호)]

제14조의4(실태확인)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제3조제1항제1호의 과태료 포함)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국세청장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실태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하

고, 제8조의 동의는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절차·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될 수 없으며, 예산액은 전액 불용될 것임.⁴¹⁾

국세청은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등 25개 법률에서 과징금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을 근거로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위탁규정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고 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볼 수 없음.

또한, 국세청은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 이전에도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통해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가 행정응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하므로 대상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세청 소관 사업에 해당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제8조제6항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⁴²⁾

41) 참고로 2026년 4월 현재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64호)」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42)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인원·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4.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둘째, 법률안 심사결과에 따라 실태확인의 대상이 되는 국세외수입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에 맞추어 예산 규모가 연동될 필요가 있음.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464호)」은 실태확인의 대상을 채납된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과 과태료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채권을 실태확인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 체계적 측면 등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국가채권 관리법」은 벌금, 과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⁴³⁾, 이는 동법이 국가와 사인 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법(私法)적 성격의 채권을 보전·행사·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⁴⁴⁾, 벌금·과태료 등은 국가가 부과하는 공법(公法)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과태료채권을 실태확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국가채권 관리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⁴⁵⁾

따라서 법률안의 심사결과에 따라 실태확인 대상의 범위가 변경되므로, 동 예산안 규모는 법률안 심사결과(과태료 등의 포함 여부)에 연동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행정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행정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⑥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43) 「국가채권 관리법」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44) 「국가채권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채권에 대한 관리기관, 관리 절차, 채권의 내용 변경 및 면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채권관리사무”란 국가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하는 채권의 보전(保全), 행사(行使), 내용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말한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 나. 법령에 따라 채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수행하는 사무
 - 다. 변제(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 라. 「물품관리법」에 따른 동산(動産)의 보관에 관한 사무

45)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16464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2026. 3.

참고로 국세청은 체납자 384만명에게 3회씩 전화 실태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2,800명의 전화실태확인원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데, 그중 과태료 체납자가 255만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66.4%에 달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채용인원 산출내역]

(전화상담, 40%) 체납자 384만명에게 최소 3회 전화 → 1,159만 건 통화	
▶ 전화상담원 1인당 1일 49명, 3회 통화 시 1,159만 건 가능	
- (1차 전화상담원) 49건 × 120일 × 1,200명(40%) =	705만 건
- (2차 전화상담원) 49건 × 58일 × 1,600명(40%) =	454만 건
	<u>2,800명</u> <u>1,159만 건</u>
(방문상담, 60%) 소액체납자 제외한 현장 방문 → 68만명 실시	
* 68만명 = 체납자 384만명 - 과태료 체납자 255만명 - 300만원 미만 체납자 61만명	
▶ 방문상담원 1팀당 1일 평균 5건 처리시 68만명 확인 가능	
- (1차 방문상담원) 5건 × 120일 × 750팀(1,800명, 60%) =	45만명
- (2차 방문상담원) 5건 × 58일 × 800팀(2,400명, 60%) =	23만명
	<u>1,550팀(4,200명)</u> <u>68만명</u>

자료: 국세청

셋째, 국세청은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가 임의로 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및 예산안 확정 권한⁴⁶⁾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재산 공매」 사업에 보호장비 구매를 위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바디캠 구입 예산 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음.

바디캠은 몸에 장착하는 개인용 비디오 녹화장치로서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한해 규율하고 있어 바디캠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음.

46)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③ (생략)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 2021. 9. 28. 제출, 의안번호 12723호)」은 2023년이 되어서야 의결되었고, 결국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국세청은 2022년도에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또한, 국세청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실시간 소득과약제도 운영」 사업에 3단계 상용근로·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을 위한 세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입법화되지 않아 안내문 발송, 홍보비, 도움 창구 운영에 따른 일용임금 등 관련 예산 5억 9,500만원은 불용하였으며, 31억 300만원은 연말에 이용(移用)하여 납세고지서 등 발송 사업의 예산 부족분에 사용한 바 있음.

이에 국회는 2022년도 결산 심사 시 ‘국세청은 향후 국회의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이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하였고, 국세청은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향후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11)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 지양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국세청은 압류재산공매, 실시간 소득과약 제도 운영 사업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예산이 불용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 ○ [시정요구사항] 국세청은 향후 국회의 법률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 ○ 국세청은 법적근거를 고려하지 못한 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산을 요구하게 된 과정을 검토한 후 책임자를 주의 조치할 것
시정요구 유형	주의
조치결과	○ 실시간 소득과약제도 운영사업 관련 상용근로·인적용역 기타소득 자료 매월 제출 법률안('22.7월 시행)이 상정되어 있어 법률안 통과 시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률안 미통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24년('25년 예산 편성)부터는 법 개정 가능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 '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4년 예산 편성 - 향후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예산 편성으로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3월 14일

자료: 정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증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4. 2.)

한편, 국세청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제12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예산 12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회 심의 결과 활동기간은 유지하되 채용규모를 100명 축소하여 정부안 대비 24억 9,300만원을 감액한 100억 5,4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음.

이처럼 국세청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정부가 임의로 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넷째, 7,000명에 달하는 실태확인원의 관리 및 실태확인 동행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세무서 직원들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세의 부과 및 징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총 610명의 동행공무원이 4,200명의 방문실태확인원과 동행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리공무원을 포함한 750명의 공무원이 7,000명에 달하는 실태확인원을 관리하고 체납관리단 제도를 운영할 예정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및 담당공무원]

(단위: 명)

구분	실태확인원			담당공무원		
	방문 실태확인원	전화 실태확인원	합계	동행공무원	관리공무원	합계
합계	4,200	2,800	7,000	610	140	750
서울지방국세청	720	480	1,200	100	30	130
중부지방국세청	840	560	1,400	120	20	140
부산지방국세청	660	440	1,100	100	20	120
인천지방국세청	420	280	700	70	10	80
대전지방국세청	480	320	800	70	20	90
광주지방국세청	660	440	1,100	90	20	110
대구지방국세청	420	280	700	60	20	80

주: 동행공무원은 방문실태확인원을 동행하여 방문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공무원은 실태확인원 채용, 직무교육, 관리,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동행공무원 1인과 방문실태확인원 2인으로 구성된 ‘동행조’와 방문실태확인원 3인으로 구성된 ‘비동행조’를 운영할 계획임.

다만, 실태확인원이 체납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기 전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간제 근로자가 체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실제 거주지 또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동 제도가 벤치마킹한 ‘국세 체납관리단’ 역시 현재 동행조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동행조를 운영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음.

또한, 현재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는 국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력이 부재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750명의 인원으로 4,200명의 방문실태확인원 동행 업무와 전화실태확인원까지 포함한 총 7,000명의 실태확인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세무서 내 다른 직원들의 동원 및 차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⁴⁷⁾, 국세청의 본연의 기능은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세금신고 안내 등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 국세 징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⁴⁸⁾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이라는 신규 업무 수행으로 인해 국세의 부과 및 징수라는 본연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 규모와 관리 역량 대비 지나치게 많은 실태확인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7) 「정부조직법」

제30조(재정경제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48)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48&cntntsId=8148>)

조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조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조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조달특별회계 예산은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되며, 각 계정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각 계정의 세출을 충당하는 구조임.

2026년도 제1회 조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계기준 7,85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3%(26억원) 감소하였고, 순계는 5,009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이는 손익계정의 주요사업비 세출 예산 증액(+26억원)에 따라 계정간 전출(입)금, 일반회계전출금을 감액(각 △26억원) 편성한 것에서 기인함.

[2026년도 조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세 입						세 출					
사 항	2025년 예산	2026년		증 감 (B-A)	증감률 (%)	사 항	2025년 예산	2026년		증 감 (D-C)	증감률 (%)
		본예산 (A)	추경안 (B)					본예산 (C)	추경안 (D)		
총 계	737,698	788,225	785,586	△2,639	△0.3	총 계	737,698	788,225	785,586	△2,639	△0.3
순 계	473,702	500,875	500,875	-	-	순 계	473,702	500,875	500,875	-	-
<손익계정 계>	459,702	500,692	500,692	-	-	<손익계정 계>	459,472	500,692	500,692	-	-
영업수입	301,217	311,199	311,199	-	-	영업비용	184,658	202,876	205,515	2,639	1.3
· 내자수입	232,211	236,277	236,277	-	-	· 인 건 비	87,431	89,672	89,672	-	-
· 외자수입	5,508	5,782	5,782	-	-	· 기본경비	13,423	13,739	13,739	-	-
· 시설수입	52,869	58,680	58,680	-	-	· 주요사업비	83,804	99,465	102,104	2,639	2.6
· 비축수입	11,079	10,460	10,460	-	-	연금부담금	10,818	10,466	10,466	2,639	-
영업외수입	65,168	86,441	86,441	-	-	자본계정전출	263,996	287,350	284,711	△2,639	△0.9
전년도세계양여금	93,087	103,052	103,052	-	-						
<자본계정 계>	278,226	287,533	284,894	△2,639	△0.9	<자본계정 계>	278,226	287,533	284,894	△2,639	△0.9
계정간전입금	263,996	287,350	284,711	△2,639	△0.9	· 기본경비	929	964	964	-	-
전년도세계양여금	5,208	183	183	-	-	· 주요사업비	59,581	92,295	92,295	-	-
기금전입금	322	-	-	-	-	회전자금전출금	80,000	80,000	80,000	-	-
기타전입금	8,700	-	-	-	-	일반회계전출금	137,716	114,274	111,635	△2,639	△2.3

주: 순계는 예산 총계에서 타계정전출금(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금액

자료: 조달청

(2) 조달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조달특별회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계기준 7,855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3,900만원($\Delta 0.3\%$) 감소하였음.

손익계정은 별도 세입증액 없이 당초 본예산과 동일(5,006억 9,200만원)하게 편성되었고, 자본계정은 계정간전입금이 26억 3,900만원($\Delta 0.9\%$) 감소한 2,848억 9,4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조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항 별	2025년 예산	2026년		증 감 (B-A)	증감률
		본예산(A)	추경안(B)		
총 계	737,698	788,225	785,586	$\Delta 2,639$	$\Delta 0.3$
순 계	473,702	500,875	500,875	-	-
<손익계정 계>	459,472	500,692	500,692	-	-
영업수입	301,217	311,199	311,199	-	-
· 내자구매 사업	232,211	236,277	236,277	-	-
· 외자구매 사업	5,058	5,782	5,782	-	-
· 시설공사 사업	52,869	58,680	58,680	-	-
· 비축물자 사업	11,079	10,460	10,460	-	-
영업외수입	65,168	86,441	86,441	-	-
전년도세계잉여금	93,087	103,052	103,052	-	-
<자본계정 계>	278,226	287,533	284,894	$\Delta 2,639$	$\Delta 0.9$
계정간전입금	263,996	287,350	284,711	$\Delta 2,639$	$\Delta 0.9$
전년도세계잉여금	5,208	183	183	-	-
기금전입금	322	-	-	-	-
기타전입금	8,700	-	-	-	-

주: 순계는 예산 총계에서 타계정전출금(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금액
자료: 조달청

(3) 조달특별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조달특별회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 7,855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3,900만원(△0.3%) 감소하였음.

사업성 예산은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관련 주요사업비 예산을 26억 3,900만원 증액한 2,987억 7,400만원(+0.9%)을 편성하였음.

비사업성 예산은 본예산 대비 자본계정전출금, 일반회계전출금 각 26억 3,900만원이 감액한 4,868억 1,200만원(△1.1%)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조달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2026년		증감 (B-A)	증감률
		본예산(A)	추경안(B)		
총 계	737,698	788,225	785,586	△2,639	△0.3
사업성 예산	245,168	296,135	298,774	2,639	0.9
· 인건비	87,431	89,672	89,672	-	-
· 기본경비	14,352	14,703	14,703	-	-
· 주요사업비	143,385	191,760	194,399	2,639	1.4
비사업성 예산	492,350	492,090	486,812	△5,278	△1.1
· 자본계정전출	263,996	287,350	284,711	△2,639	△0.9
· 공무원연금부담금	10,818	10,466	10,466	-	-
· 회전자금전출금	80,000	80,000	80,000	-	-
· 일반회계전출금	137,716	114,274	111,635	△2,639	△2.3

자료: 조달청

2. 검토의견

(1)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 실시 전 면밀한 준비 필요 등 (조달특별회계(손익):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시설사업국)

< 현 황 >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은 총사업비 대상공사 실시설계·설계변경 단가 및 설계적정성 검토, 공공 발주공사 사업관리 대행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025년 대비 26억 3,900만원 증가한 59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내역사업인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계약체결 전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인력·조직 운영 및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에 26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 편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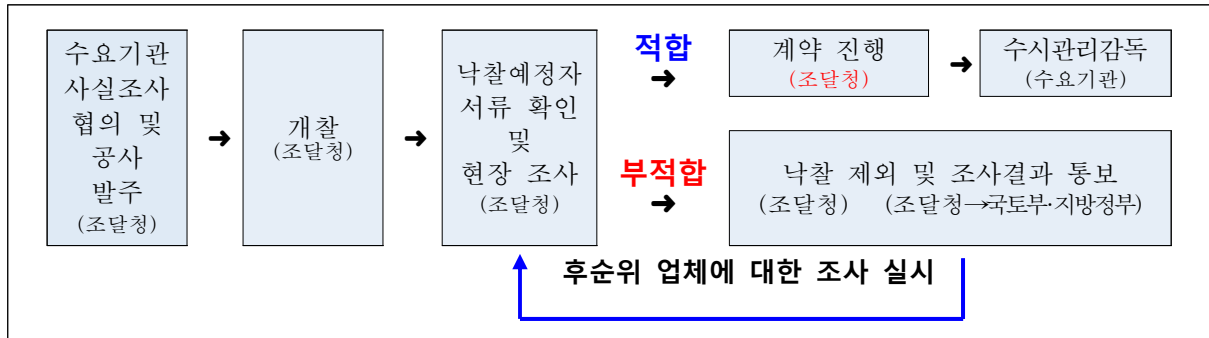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지원(1236-345)	3,007	3,007	3,359	5,998	2,639	78.6
-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	-	-	2,639	2,639	순증

자료: 조달청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이하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정하고 안전한 공공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공사수행을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실제 시공·관리 능력이 없거나 미흡한 건설업체인 ‘페이퍼컴퍼니’를 확인하여 낙찰자에서 제외하고자, 개찰 후 1순위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 시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해 기술자 보유 외 자본금·사무실 기준 충족 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임.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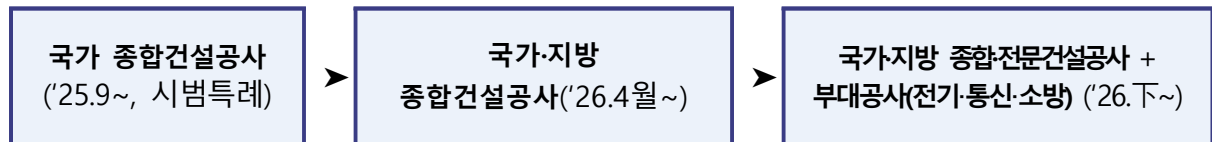
입찰 공고	○ 사실조사 대상 공고 알림
↓ 개찰	○ 조사대상 업체(1순위업체 부터)에 조사 시행 알림
↓ 자료 수집 및 요청	○ 관련 자료 수집 * 기술자보유(기술인력), 건축물 대장(사무실) 등 ○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7일)
↓ 점 검	서류 확인 ○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확인
	↓ 현장 조사 ○ 업체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 실시(2인 1조)
↓ 결과 보고	○ 페이퍼컴퍼니 확인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조사
↓ 낙찰자 결정	○ 페이퍼컴퍼니 조사결과를 적합업체를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적합업체와 계약체결

자료: 조달청

< 검토의견 >

첫째,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전조사의 근거를 조달청 내부기준에 규정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나 민간 업자에게 현장조사를 받을 사실상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내부기준보다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달청은 2025년 10월부터 조달청 시범특례사업으로서 국가 종합건설공사 중 수요기관과 협의된 사업에 대해 적격심사 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시범실시하였으며, 2026년 4월부터는 국가·지방 종합건설공사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국가·지방 종합·전문건설공사 및 부대공사(전기·통신·소방) 등 전체 시설공사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조달청은 2026년 3월 적격조사에 대한 조달청 지침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적격심사 세부절차 및 수행능력 심사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를 진행하였음.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전조사의 법적근거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입찰 참가신청) 제2항⁴⁹⁾에서 ‘사실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시행규칙상 사실조사는 1995년 동 시행규칙 제정 시부터 규정된 것으로 입찰 참가 시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조달청이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 대상으로 실시하려는 서류확인·현장조사와는 시점·대상 등에 차이가 있음.

오히려 조달청은 시범실시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2⁵⁰⁾에 따른 시범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시범특례에 따른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이하 이 조에서 “시범특례”라 한다)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례사업 대상 내부지침인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025년 10월 제정하고, 동 기준 제6조제4항⁵¹⁾에 기반하여 시범특례사업 중 국가 종합건설공사의 적격심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현재 입찰자격 사전조사 전면 실시를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적격심사⁵²⁾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세부절차, 결격사유 및 재심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계약예규인 「적격심사기준」에 근거한 조달청 내부기준에 불과함.

즉, 조달청이 시범실시 중인 적격심사 과정의 ‘입찰자격 사전조사’는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그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며, 조달청은 이를 내부지침의 제·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적격심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전체 시설공사에 적용될 경우 해당 계약건의 낙찰 예정자들에게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상의 의무가 부과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달청 내부지침보다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적격심사에 대한 사실조사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2026년 하반기부터 조달청 발주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많은 조사건수로 인하여 계약 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조사대상 확대 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함.

조달청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시범특례사업인 국가종합공사 8건에 대해 입찰자격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6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②~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계약의 종류, 계약의 목적물 또는 계약 대상 사업의 혁신성·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제4항제2호에 따른 시범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고,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 체결 기준·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⑥~⑨ (생략)

51)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적격심사 결정 및 재심사) ④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입찰공고문에 명시)와 현장조사(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자본금 및 사무실 충족 여부 등)를 통해 확인한다.

5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025년 10월 ~ 2026년 3월 시범특례사업 입찰자격 사전조사 실시 현황]

구 분	사업수 (건)	세부내역		
		사업명	추진기간	현장조사
건설	8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구)1공 학관 공원화 사업(공주대학교)	'25.10.~'25.11	X ¹⁾
		- 기초교육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건축,토목,조경)(국립순천대학교)	'25.11.~'26.02	O
		- 국립경국대학교 동물백신 실증센터 신 축공사(건축,토목)(국립경국대학교)	'25.12.~'26.01	O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 주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25.12.~'26.01	O
		- 백령스포츠허브 수영장 보수공사 (강원대학교)	'25.12.~'25.12	X ¹⁾
		- 엔진 제어 유지관리 설비동 구축 (제어계측동 증축) 건설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5.12.~'26.01	O
		- 국립경국대학교 외국어교육관 외벽개 선 및 창호교체 공사(국립경국대학교)	'25.12.~'26.02	O
		- 상지석지영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6.01.~'26.03	O

주: 1) 타기관 조사로 면제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전조사 사업 대상이 발주 공사(건설·전기·통신·소방 등) 전체로 확대될 경우 월 평균 약 220건, 연평균 약 2,640건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국가·지자체 시설공사 중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 2,305건에 1순위 부적격 등에 따른 추가 점검 요인 15%⁵³⁾를 추가 반영한 것임.

53) 추가점검요인 15% = 국토부 등 타 기관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 적발비율(평균 26.3%) - 국토부·지자체 실태조사에서 적격 판정받아 조달청의 사실조사 면제 판정(2024년 전체 건설업체 중 국토부 등 실태조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비중 11.1%)

[2023~2025년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 현황(추정가격 기준)]

(단위: 건)

구 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미만	계
2023년	314	292	771	870	209	54	2,510
2024년	335	314	719	804	162	45	2,379
2025년	351	216	628	697	111	22	2,025
연평균	333	274	706	790	161	40	2,305

자료: 조달청

시범실시 기간 및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할 경우 입찰자격 사실조사 절차인 서류제출(+7일), 자본금 요건 심사(+7일)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체결 지연 문제⁵⁴⁾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입찰자격 사전조사 대상의 급격한 확대로 인해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계약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방식·기준 마련 및 업무교육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셋째, 현장조사를 위한 차량 임차료 등 일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로서 현장조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판단,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낙찰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 현장조사에는 공무원 1인과 기간제 근로자 1인을 1개조로 하여 총 22개조를 운영할 계획으로, 실질적인 수행과 판단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보조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상기 현장조사를 위해 바디캠 및 안전화·근무복 구입비용, 국내여비 외에 출장지 이동에 위한 차량 임차 22대 1억 3,200만원 및 유류비 1,549만원 등이 추경안에 편성되어 있음. 이 중 차량 임차의 경우 1개조 당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 22대를 6개월간 임차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음.

54) 최근 3년간 개찰에서 계약까지의 소요기간은 평균 21일이며,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7일, 자본금 요건 심사 +7일 등이 추가 소요될 예정임.

[입찰자격 사실조사 현장조사 관련 예산편성 세부내역]

비 목	항목	편성액 (천원)	세부 산출내역
일반수용비	바디캠	12,180	• 290,000원 × 42개
공공요금및제세	운전자보험	2,520	• 10,000원 × 42인 × 6월
피복비	안전화 및 근무복	10,500	• 안전화 : 2,100천원 = 50,000원 × 42인 • 근무복 : 8,400천원 = 200,000원 × 42인
유류비	차량 유류비	15,491	• 70원 × 1,680km/월 × 22대 × 6월
국내여비	일비·식비· 숙박비	40,740	• 일비 : 26,775천원 = 12,500원 × 42인 × 51일 • 식비 : 3,675천원 = 25,000원 × 42인 × 3.5일 • 숙박비 : 10,290천원 = 70,000원 × 42인 × 3.5일
임차료	사실조사 차량 임차	132,000	• 1,000,000원 × 22대 × 6월

자료: 조달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조달청이 국내여비 중 일비를 6개월 간 출장 51일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일수는 1개조당 월평균 8.5일(51일 ÷ 6개월)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1개조 당 1대의 임차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임차료 예산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